

농가의 상속과 경영승계에 관한 연구

이 성 호 책임연구원
김 정 호 연구위원

연구 담당자	담당 분야
이 성 호	제4장, 제5장, 제6장, 부록 집필
김 정 호	제1장, 제2장, 제3장 집필

머 리 말

그동안 우리 농업은 상속농가를 근간으로 발전하여 왔으나, 최근 이·탈농이 급진전되면서 장래의 농업경영 주체의 확보라는 측면에서 후계자에 의한 농가의 상속 문제가 농정의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더욱이 우리 농업은 앞으로도 상당 기간 가족농을 근간으로 발전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건실한 전업농과 후계자의 경영승계에 대한 대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 특히 최근의 농업을 둘러싼 여건 변화는 농가의 상속 인식이나 관행을 급속하게 변모시키고 있는 것으로 사료되는바, 이에 대한 동향과 실태를 파악하여 관련 정책의 방향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농가의 상속은 재산 상속과 경영승계라는 두 가지 측면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따라서 상속 문제를 흔히 일컬어지는 재산 상속의 범주에서 접근하기보다는 총체적인 경영 자산의 승계 과정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경영주로부터 후계자에게 어떻게 경영이 승계되고 또한 이 과정에서 후계자는 어떻게 경영의 자립을 실현하는가 하는 것이다. 즉, 농가의 상속은 후계자의 경영 자립을 통해 이루어지는 과정의 문제인 것이다.

위와 같은 문제 의식하에서 이 연구는 먼저 농가의 상속과 경영승계에 관한 개념적인 틀을 정리하였으며, 이러한 개념 틀을 가지고 당원의 현지통신원에 대한 우편 조사와 사례마을의 현장 조사를 병행하여 상속 관습 및 경영승계의 실태를 폭넓게 조사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서 분석된 농가 상속에 대한 농어민의 의식, 상속의 관행과 실태 및 경영승계의 과정 등의 조사 결과가 관련제도 및 정책 개선에 유익한 시사를 줄 것으로 기대하며, 조사에 협력하여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1995. 12.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정 영 일

빈

면

목 차

제 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
2. 연구의 내용과 방법	4
3. 보고서의 구성	5

제 2장 농가 상속의 개념과 형태

1. 농가 상속의 개념	7
2. 경영승계의 수단과 농가 상속의 유형	13

제 3장 농가의 상속 관행과 변천 과정

1. 상속 관습과 상속제도의 변천	17
2. 현대의 상속 관행과 의식구조	25
3. 농지상속 관행의 변화와 그 성격	29

제 4장 농가 상속과 경영승계의 실태분석

1. 조사농가의 개황	34
2. 농가 상속의 수단과 형태	36
3. 경영승계와 자립 과정	40
4. 후계자 실태와 경영 이양	46
5. 농가 상속 및 경영승계에 관한 의식구조	53

제 5장 경영승계에 따른 농지유동화의 전망

1. 조사마을의 개황	60
-------------------	----

2. 보유농지의 취득경로 분석	65
3. 농지유동화의 전망	72

제6장 요약 및 결론

1. 연구 결과 요약	77
2. 결론 및 정책 함의	82

부 록

1. 외국의 농가 상속제도	84
2. 농가 상속과 경영승계에 관한 의견 조사표	89

표 목 차

제2장

표 2- 1	농가 상속의 기본 유형	16
--------	--------------------	----

제3장

표 3- 1	선행연구에 의한 농지상속 형태	26
표 3- 2	장자 상속에 대한 관행	27
표 3- 3	농지 상속의 형태에 대한 관행	27
표 3- 4	농지 승계의 수단에 대한 관행	28
표 3- 5	주택 승계의 형태에 대한 관행	28
표 3- 6	농기계 또는 가축 승계의 형태에 대한 관행	28
표 3- 7	비농민 상속자의 농지 관리에 대한 관행	29
표 3- 8	재산상속을 둘러싼 분쟁 여부	29
표 3- 9	상속받은 연대별 농지상속의 형태	30

제4장

표 4- 1	조사농가의 도별 분포	34
표 4- 2	조사농가의 연령별 분포	35
표 4- 3	조사농가의 경지규모별 분포	35
표 4- 4	조사농가의 지대별 분포	35
표 4- 5	조사농가의 상속면적 비율별 분포	36
표 4- 6	조사농가의 주작목별 분포	36
표 4- 7	재산 상속의 수단	38
표 4- 8	재산 상속의 형태	39

표 4- 9	경영승계의 현황	41
표 4-10	경영승계자의 가족내 위치	43
표 4-11	경영승계의 형태	44
표 4-12	주작목별 생전의 경영승계의 이유	46
표 4-13	경영승계를 위한 후계자 확보 상황	47
표 4-14	후계자에 대한 경영승계의 방법	49
표 4-15	후계자에 의한 경영승계의 전망	50
표 4-16	주작목별 향후의 잔여 영농기간	51
표 4-17	농지의 승계 방법에 대한 의향	54
표 4-18	농지 상속에 대한 의향	56
표 4-19	비농민 상속자녀의 농지처분 관행	58

제 5장

표 5- 1	안성군 후평리의 농가상속 개황	61
표 5- 2	부량면 대평리의 농가상속 개황	62
표 5- 3	청안면 조천4리의 농가상속 개황	64
표 5- 4	미양면 후평리의 농지유동화 전망	73
표 5- 5	부량면 대평리의 농지유동화 전망	74
표 5- 6	청안면 조천4리의 농지유동화 전망	75

그림 목 차

제 2 장

그림 2-1	농가 상속의 개념적 이해	10
--------	---------------------	----

제 5 장

그림 5-1	미양면 후평리의 보유농지 취득경로	67
그림 5-2	부량면 대평리의 보유농지 취득경로	69
그림 5-3	청안면 조천4리의 보유농지 취득경로	71

빈

면

제 1 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그동안 우리 농업은 상속농가를 근간으로 발전하여 왔으나, 최근 이·탈농이 급진전되면서 농가의 존속 및 농업경영의 승계가 농정의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농가의 감소는 1960년대 후반부터 지속되는 추세이지만, 여기에 더하여 최근에는 농업경영주의 고령화와 더불어 영농후계자 부족이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는 현실이다.

따라서 우리 농업의 미래를 담당해야 할 주체로서 영농후계자를 확보하고 이를 전업농으로 육성하는 것이 당면한 농업구조정책의 핵심적인 과제이기도 하다. 특히 우리 농업은 앞으로도 상당기간 동안 가족농을 근간으로 발전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건실한 전업농을 육성하고 또한 이를 이어나갈 후계자의 경영승계에 대한 대책이 시급히 마련되지 않으면 안될 시점에 와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할 것도 없이 농가의 상속과 경영승계는 가족농 체제의 유지를 위한 근본 문제이며,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하고 있는 국가들이 공통적으로

당면하고 있는 과제이다. 근대자본주의를 바탕으로 농장제 농업을 발전시킨 미국이나 EU(유럽연합)는 물론 아시아의 소농국가들도 가족농 체제를 어떻게 유지 발전시킬 것인가 하는 과제에 당면하고 있다. 이러한 연유로 대부분의 선진농업국에서도 최근에 들어 후계자 부족이라는 새로운 상황에 접하면서 가족농의 승계를 위한 대책에 부심하고 있는 추세이다.

가족농은 본래 후계자의 상속 및 경영승계의 메카니즘을 통하여 새로운 농업경영을 재창출할 수밖에 없다. 물론 신규로 창설되는 경우도 있지만, 이것은 수적으로 볼때 어디까지나 상속농가를 보완하는 수준에 불과한 것이 현실이다. 또한 최근에는 기업적 요소를 가미한 법인경영이 다양하게 성립되고 있지만, 이것 역시 가족농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수단으로 출현한 이른바 가족농의 발전적인 형태라는 점에서, 가족농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경영주가 가진 경영 능력 등 무형의 자산이 후계자에게 승계되는 것은 가족농 체제가 가지는 가장 큰 강점이기 때문에, 가족원 중에서 후계자를 확보하는 것이 가족농 체제를 유지하는 제1차적 과제인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경영주가 수년에 걸쳐 가꾸어 온 농업경영의 각종 지식과 경험이 후계자에게 승계되지 못하고 사장되는 것은 달리 말하면 사회적인 손실이기도 한 것이다. 따라서 후계자에 의한 농업경영의 승계는 개별농가의 측면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한 수단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농가의 상속 문제는 비단 오늘날에만 강조되는 것은 아니다.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우리 농업은 역사적으로 상속농가를 근본으로 발전하여 왔기 때문에, 상속 관습이 미치는 범위는 대단히 크다. 이러한 연유로 농가의 상속은 일반적으로 관습법에 의존하고 있으며, 피상속자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민법의 규정에 의한 법정상속이 행해지는 것이 보편화되어 있다.

따라서 농가의 상속이란 의미도 여러 가지로 나타나며, 흔히 재산상속을 염두에 두고 '농가 상속 = 농지 상속'이라는 등식으로 이해되기도 한다.

농가의 상속 문제를 다룬 기존의 연구에서도 대부분의 연구자가 가지는 주된 관심은 농지의 상속이었다. 특히 법제적인 접근의 연구에서는 농지의 세분화 경향에 주목하고 제도적인 대응책을 제시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본 연구에서도 주된 관심이 농지 상속이라는 점을 부인하지는 않는다.

그런데 엄밀히 말해서 농가 상속은 재산 상속과 경영승계라는 두 가지 측면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다시 말해서 재산 상속은 농가 상속의 일부분에 지나지 않으며, 농가의 상속은 궁극적으로 후계자에게 경영이 승계되는 과정으로 봐야 할 것이다. 따라서 농가의 상속 문제를 흔히 일컬어지는 재산 상속의 범주에서 접근하기보다는 총체적인 경영 자산의 승계 과정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경영주로부터 후계자에게 어떻게 경영이 승계되고 또한 후계자는 이러한 과정에서 어떻게 경영의 자립을 실현하는가 하는 것이다. 즉, 농가의 상속은 후계자의 경영 자립을 통해 완결되는 과정의 문제인 것이다.

우리 농업은 앞으로도 상당기간 동안 가족농을 근간으로 발전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건실한 농가의 상속대책이 시급히 정립되어야 한다. 특히 최근의 농업여건 변화는 농가 상속에 인식이나 관행을 급속하게 변모시키고 있는 것으로 사료되는바, 이에 대한 동향과 실태를 총체적으로 파악하고 아울러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전업농으로 정착하고 있는 농가의 경영승계 과정과 조건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특히 최근의 농업을 둘러싼 여건 변화는 농가의 상속에 인식이나 관행을 급속하게 변모시키고 있는 것으로 사료되는바, 이에 대한 동향과 실태를 파악하여 관련 정책의 방향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농가의 상속과 경영승계에 관한 의식과 관행의 변화 및 현재의 실태를 조사분석하여 정책적인 시사를 얻고자 하는데 주된 목적이 있다. 구체적으로 농가의 상속과 경영승계에 관한 개념적인 틀을 정리하고, 이러한 개념 틀을 가지고 농가의 상속에 대한 농어민의 의식, 상속의 관행과 실태 및 경영승계의 과정 등에 관하여 조사 분석함으로써 관련제도 및 정책적인 개선 사항에 대한 시사를 얻고자 한다.

2. 연구의 내용과 방법

2.1. 연구 내용

이 연구는 표제와 같이 조사연구의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현상을 사실 그대로 파악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따라서 연구 내용은 실태 분석을 중심으로 하고, 먼저 연구의 접근시각을 농가의 상속과 경영승계에 관한 개념적인 틀을 정리하였다. 이어서 이러한 개념 틀을 가지고 당원의 현지통신원에 대한 우편 조사와 사례마을의 현장 조사를 병행하여 상속관습 및 경영승계의 실태를 폭넓게 조사 분석하였다.

주요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 농가 상속의 개념과 유형
- 농가 상속의 성격
- 농가 상속에 관한 법적·제도적 변천과정
- 농가 상속에 관한 농어민의 의식
- 농가 상속의 관행과 실태
- 농가의 상속 및 경영승계의 과정
- 경영주의 경영 이양에 대한 의향
- 후계자의 경영승계에 대한 의향
- 상속 관행에 의한 농지유동화 전망
- 외국의 농가상속 실태 및 관련제도

2.2. 연구 방법

위와 같은 연구 내용을 수행하기 위하여 조사연구의 방법으로는 문헌조사와 우편조사 및 현지조사를 실시하였다.

먼저 문헌조사는 관련통계 및 관련법률 등의 수집 정리, 선행연구에 의

한 상속실태 조사결과 정리, 외국의 상속제도와 상속관행에 관한 자료정리 등을 수행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문헌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론적 틀을 정리하고 조사연구의 내용과 방법을 설정하였다.

상속과 경영승계에 관한 실태조사는 우편조사 및 현지조사로 나누어 수행하였다.

먼저 전국적인 관행과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당연구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현지통신원 2, 200명을 대상으로 부록의 설문지를 작성하여 7월 10일에 발송하고 8월 31일에 회수를 마감하였다. 그리고 회수된 조사표 중에서 부실 기재된 것을 제외하고 총869개를 분석에 이용하였다.

위의 전국 조사를 보완하고 특히 상속 관행에 의한 농지 유동화를 전망하기 위하여 자연부락을 선정하여 전수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마을은 모두 순농촌의 성격을 가지는 마을로서, 도시근교 지대에서는 경기도 안성군 미양면 후평리, 중산간 지대에서는 충북 괴산군 청안면 조천4리, 평야지대에서는 전북 김제군 부량면 대평리 대장부락 등 3개 마을을 선정하였다. 조사 시기는 후평리에 대해서는 9월과 11월의 두 차례, 대평리와 조천2리에 대해서는 11월에 한 차례의 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결과의 집계 및 분석은 제표 분석을 주로 이용하였으며, 통계 처리의 방법으로는 SAS 6.04(PC Version)과 Quattro Pro 3.0 등을 활용하였다.

3. 보고서의 구성

이 연구는 크게 4개의 장으로 구성하여, 제2장과 제3장에서는 본조사의 접근 시각과 기초적인 개념을 정립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연구의 주목적인 상속 관행과 실태조사의 결과를 제4장과 제5장으로 나누어 제4장에서는 당연구원 현지통신원 조사 결과를 분석하고, 제5장에서는 마을 단위의 조사 결과를 분석하였다.

각장에서 다루어야 할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장은 농가 상속의 개념과 형태를 고찰하는 부분으로, 본조사에서 사용될 용어의 개념을 정립하고 제4장 이하에서 조사되어야 할 내용 및 방법론을 검토하였다. 특히 농가의 상속이 단지 재산 상속만이 아니라는 인식 하에 경영승계의 수단과 상속의 유형을 정리하였다.

제3장에서는 농가의 상속 관습과 변천 과정을 정리하고 그 성격을 규명하였다. 따라서 이 장은 우리 나라의 농가 상속에 관한 관행이 어떻게 형성되어 변화되었는지를 선행연구 및 본연구의 조사 결과와 비교 검토하고, 현재의 시점에서 상속 관습의 내용과 성격을 규명하는 부분이다.

제4장에서는 현지통신원 조사 결과를 이용하여 농가 상속과 경영승계의 실태를 분석하였다. 여기서는 먼저 조사 농가의 개황을 설명하고, 농가 상속의 수단과 형태, 농업경영의 승계와 자립 과정, 후계자의 실태와 경영 이양, 그리고 농지 상속에 대한 의향 등을 검토하였다.

제5장은 마을 조사를 토대로 상속 관행에 의한 농지 유동화의 전망을 분석하는 부분이다. 여기서도 먼저 조사 마을의 개황을 살펴보고, 농지 상속과 관련하여 현재 보유하고 있는 농지에 대한 취득 경로를 분석한 후에, 이를 기초로 향후의 농지 유동화에 대한 전망을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부록에서는 외국의 농가(농장) 상속제도 및 실태에 관하여 선행연구의 결과를 요약하여 정리하였다. 특히 외국의 상속제도는 우리나라와 유사한 내용이 많기 때문에 관련제도 및 정책 수립에 있어서 유익한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제 2 장

농가 상속의 개념과 형태

1. 농가 상속의 개념

1.1. 상속의 개념

일반적으로 상속(succession)이라 함은 死後의 財産移轉으로 이해되며, 법학적으로는 “권리 주체의 인격 소멸에 따라 일어나는 그 자에 속하는 재산의 분배와 법적 지위의 승계”라고 개념되고 있다.

상속에 대한 현행의 민법적 정의를 요약하면, 자연인에게 속하는 재산 및 권리(의무)가 그 주체의 인격 소멸에 의하여 법률의 규정 혹은 피상속인의 의사에 따라 일정한 자에게 이전되는 것을 말하고 있다.¹

다시 말해서 상속이란 피상속자의 사후에 일어나는 것이며, 생전에 승계

¹ 우리 나라의 상속 관습은 제사상속, 호주상속, 재산상속의 순으로 변천되어 왔으나 재산의 승계와 결부되지 않은 상속 형태는 없었으며, 따라서 상속제도는 재산제도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이에 대해서는 김용환(1964, 259) 및 김기수(1977, 346)을 참고할 수 있다.

되는 증여나 명의 이전과는 엄격히 구별된다. 민법 제997조에서 상속 개시의 원인을 사망으로 규정하고 있듯이, 상속이란 피상속인에게 속하는 경영 자산 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최종적인 결제 수단이 된다. 이와 같이 민법상의 정의에서 상속은 사망자의 재산이 누구에게 귀속되는가의 관점에서 출발하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상속에 관한 사회일반의 관념은 법률적인 정의보다 광의의 의미로 해석하려는 경향으로 보인다. 즉, 앞에서 지적하였듯이 상속은 피상속자의 사망에 의하여 실현되는 법률적인 행위이지만, 관습적으로는 생전 증여를 포함하여 피상속자인 부모가 소유한 재산상의 지위(또는 권리 의무)를 자식인 상속자가 이전받는 것으로 이해된다.

우리 농업은 역사적으로 상속능가를 근간으로 발전하여 왔기 때문에, 상속에 대해서도 관습이 미치는 범위가 대단히 크다. 이러한 연유로 농가의 상속은 일반적으로 관습법에 의존하고 있으며, 피상속자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특별한 경우에 한해서만 민법의 규정에 의한 법정상속이 이루어지는 것이 보편화되어 있다.

현행 상속제도에서도 법정상속보다는 합의상속과 같은 관습법에 의존하는 것이 보편적이며, 특히 分家·出家 과정에서 피상속자의 재산분할이 광범위하게 행해지고 있는 것이 결과적으로 상속과 다를 바 없다는 인식이다. 본연구에서 면접 조사한 농가에서도 대부분의 경우 상속과 증여를 구별하지 않고 단지 소유권 이전의 의미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많았다. 즉, 동기나 시점에 관계 없이 부모의 재산적 권리가 자식에게 이전되는 것을 포괄적인 상속의 범주로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현실적으로는 농가의 상속에 대한 의미가 여러 가지로 해석되고 있지만, 학문적으로는 아직까지 농가 상속의 개념이나 성격을 명확히 준별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²

² 일본의 稻本洋之助와 原田純孝 등은 수년간에 걸쳐 프랑스의 상속 실태를 조사하고 농가 상속(succession agricole)의 개념과 유형을 정리하여 발표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稻本洋之助(1984), 稻本洋之助 外(1981), 原田純孝(1986a; 1986b; 1987;

우리 나라에서 농가의 상속에 관한 연구는 사회학적 접근과 법학적 접근으로 나눌 수 있으나, 농가 상속을 직접 다룬 연구는 찾아볼 수 없다. 다만, 사회학 연구에서는 가족 관계의 변화를 규명하기 위하여 소위 身分相續에 대한 관습과 실태를 약간 언급하는 정도이다.³

또한 법학 연구에서는 재산상속에 중점을 두고 ‘농가 상속 = 농지 상속’이라는 등식으로 이해하기도 한다. 농가의 상속 문제를 다룬 기존의 연구에서도 대부분의 연구자가 가지는 주된 관심은 농지의 상속이었다. 특히 농지제도법제적인 접근의 연구에서는 농지의 세분화 경향에 주목하고 농지 입법 측면의 대응책을 제시하는데 중점을 두었다.⁴

본연구에서도 농가 상속의 주된 관심이 농지 상속이라는 점을 부인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농촌 현장의 관습에서 지적되듯이 농가 상속이 단지 농지라는 재산의 상속만이 아니며, 또한 경영주의 사망에 의한 상속만이 아니고, 나아가서 후계자에게 ‘家’를 물려 주는 과정까지 포함하고 있다는 인식은 이 연구에서 농가 상속을 개념 규정하는데 오히려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 연구에서 개념적으로 파악하고자 하는 농가 상속의 내용적인 범위는 일반적으로 규정되는 법학적 정의보다 넓다. 즉, 농가 상속의 의미는 일반적인 재산 상속의 범위를 크게 초월하는 개념으로 이해하려는 것이 이 연구의 출발점이라고도 할 수 있다.

엄밀히 말해서 농가 상속은 재산 상속과 경영승계라는 두 가지 측면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다시 말해서 재산 상속은 농가 상속의 일부분에 지나지 않으며, 농가의 상속은 궁극적으로 후계자에게 경영이 승계되는 과정으로 봐야 할 것이다.

1988) 등을 참고할 수 있다.

³ 이에 대해서는 최재석(1970), 이광규(1990), 한국가족학연구회(1993) 등을 참고할 수 있다.

⁴ 농지상속에 관한 법학적 연구로는 이봉(1972), 김용환(1974), 최달곤(1975), 권오승(1978), 신영호(1980) 등이 있다.

그림 2-1 농가 상속의 개념적 이해

경영주 (은퇴) ↓ 후계자 (자립)	후계자 확보의 과정
	경영권 이전의 과정
	소유권 이전의 과정

농가의 상속은 후계자에게 농업경영이 승계되는 것을 의미하며, 일반적인 재산·권리의 이전뿐만 아니라 경영주의 은퇴 및 후계자의 경영 자립이라는 포괄적인 과정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즉, 농가의 상속은 후계자의 경영 자립을 통해 완결되는 과정의 문제인 것이다.

따라서 농가의 상속 문제를 흔히 일컬어지는 재산 상속의 범주에서 접근하기보다는 총체적인 경영 자산의 승계 과정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경영주로부터 후계자에게 어떻게 경영이 승계되고 또한 후계자는 이러한 과정에서 어떻게 경영의 자립을 실현하는가가 농가 상속 연구에서 일차적으로 탐구되어야 할 과제이다.

이 연구에서는 농가 상속에 대한 개념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즉, 농가 상속이란 농가의 농업 경영을 구성하는 영농자산(유형·무형자산)의 전부 또는 일부가 수익 및 소유의 관점에서 경영주로부터 후계자에게 원칙적으로 무상으로 승계되는 과정이라고 규정한다.

1.2. 농가 상속의 복합적 성격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이 연구의 '농가 상속'의 개념에서는 가족경영(family farm)이 부자간에 어떻게 승계되는가가 중요한 관심사이다. 특히 부자간에 있어서 경영 이양이 증시되며, 경영주의 은퇴(retirement)와 후계자의 자립(installation)과의 관계가 규명되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먼저 농가 상속과 경영 이양 및 승계는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첫째는 농가의 상속이 장기성과 단계성이라는 과정을 가진다는 점이다.

앞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법률상의 상속 개념과 농가가 생각하는 관념은 여러 면에서 일치하지 않으나, 그 기본적인 차이는 상속을 사망에 의해 필연화하는 사후적인 재산 이전으로 보느냐, 아니면 경영 이양을 염두에 두고 생전에 재산을 이전하는 행위까지를 포함하느냐 하는 것이다.

엄밀하게 말해서, 전자의 측면에서 보면 후자는 사후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분쟁 등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이 될 것이며, 후자의 측면에서 보면 전자는 미리 경영 이양을 준비하지 못하고 사망이라는 우연적인 사정에 의해 재산이 이전되는 것으로도 간주할 수 있는 것이다.⁵

이러한 논의는 결국 재산을 언제 이전하느냐 하는 시점의 문제이며, 소유권 이전이라는 점에서는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는 것이다. 농가 상속이 경영 이양 및 승계라는 과정에서 파악되어야 한다고 하는 문제 의식이 바로 여기에 있다.

물론 법률적인 상속의 개념에 한정하여 생각하면 위와 같은 관점은 일농의 할 여지도 없는 것이지만, 농가에서 행해지는 후계자에 대한 상속 관습을 볼 때 재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은 경영주 사망의 효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경영주의 적극적 행위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후계자에게 경영을 이양하기 위하여 경영주가 소유한 재산의 일부를 증여한다거나 또는 농지를 매입하는 경우에 후계자 명의로 등기하는 등의 단계적인 조치들이 보편적으로 채택되고 있다.

즉, 현실적으로 농가의 상속은 경영주의 사망으로 나타나는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경영주의 이양에 대한 후계자의 승계라는 일련의 과정이며, 일반적으로 재산 상속(소유권 이전)과 경영승계는 동일하게 나타나지 않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오히려 소유권 이전은 경영 이양을 위한 사전 조치로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가장 적절한 조건하에서

⁵ 稻本洋之助(1984)는 피상속자인 경영주가 상속을 위한 아무런 준비 없이 사망한 경우를 '不準備 相續'(non prepare succession)으로 칭하였다.

실현될 필요가 있다.

둘째는 경영주 은퇴와 후계자 자립의 상호 연관성이다.

농가의 상속은 농업경영의 승계와 재산의 승계라는 두 가지 요소를 포함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피상속자인 경영주가 은퇴한 후에 후계자의 자립을 통하여 상속이 완결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농촌에서는 은퇴에 대한 관념이 희박하고 대부분의 경우 경영주 사망의 결과로서 후계자의 자립이 실현되는 것이 보편적이다. 흔히 일궈어지듯이 병환으로 인하여 일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사망하기 전까지 힘 있는 한 농사일에 종사하는 것이 농촌의 보편적인 관습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농업경영에서 은퇴(retirement)란 단지 노동력 측면에서의 판단이 아니며, 엄밀하게 말해서 고령을 이유로 경영주의 지위에서 물러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법적 관념으로는 경영 자산의 사용수익권의 이양 또는 포기 등의 행위가 은퇴의 지표가 될 수 있다. 우리 나라에서도 금년부터 농어민연금제도가 실시되고 있지만, 농업에서도 이제 점차 은퇴에 대한 관념이 자리잡혀 가는 단계로 보인다.

반면에, 경영의 자립(installation)이란 농업경영자 내지 농업경영주의 지위를 가지고 농업경영을 주재하는 것을 말한다. 물론 농업경영자의 개념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겠지만, 여기서는 협의의 의미의 농업경영주이며, '농업경영주 = 世帶主 또는 戶主'의 의미로는 해석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어떻든 경영의 은퇴와 자립은 서로 상호배타적인 관계에 있기 때문에, 경영주의 은퇴 시기 및 방법은 후계자의 자립과 밀접하게 연결될 수밖에 없다.

현실적으로 후계자에게 농업경영이 이양되는 과정에는 어떠한 형태로든 지 영농자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을 수반하게 마련이다. 이 때 경영주가 은퇴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에 대한 조치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나,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유산분할을 초래하게 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농가 상속은 복합적이고 시간이 걸리는 변동의 과정이며, 따라서 경영주의 은퇴와 후계자의 자립은 농가 상속이라는 전체적인 과정 속에서 파악되어야 할 문제이다.

2. 경영승계의 수단과 농가 상속의 유형

2.1. 농업경영승계의 단계와 성격

농가 상속은 농업경영의 후계자에 대한 경영 이양과 재산 상속자에 대한 소유의 이전이라는 두 가지 요소를 포함한다. 이렇게 구분해 볼 때, 전통적으로 농가 상속은 이 두 가지 요소가 일치하는 것으로 이해되어 왔으나, 최근에 들어서는 후자인 '자산 승계'가 강조되면서 전자의 '경영승계'의 측면이 약화되는 경향이 지적된다. 농가 상속의 요소를 구분하는 의의가 여기에 있다.

물론 위에서 자산의 승계가 경영의 승계와 무관하게 이루어진다면 이는 일반적인 재산 상속으로 간주되어야 하며, 농가 상속이라고는 볼 수 없다. 즉, 농가 상속은 다름 아닌 농업경영의 승계이며, 여기에는 농업경영을 담당할 후계자의 확보가 전제되는 것이다.

따라서 농업경영승계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단계로 나눌 수 있으며, 이것은 경영승계의 과정으로도 파악할 수 있다.

첫번째 단계는 후계자 확보의 단계이다. 농업경영의 승계를 위해서는 일차적으로는 경영자산을 무상으로 이전할 수 있는 후계자를 친족내에서 확보하여야 한다. 따라서 후계자가 나서지 않는 경우에는 은퇴시까지 승계를 유보하고 장래의 상속을 기대할 수밖에 없다. 또한 장래의 경영승계를 기대하는 수단으로 부분적인 소유권 이전이 있을 수 있으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후계자 확보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는 정도가 될 것이다.

두번째 단계는 농업경영에 대한 경영권이 후계자에게 이전되는 단계이

다. 물론 이 단계에서도 경영주는 경영 이양과 소유의 이전이라는 복합적인 관계를 고려하게 되지만, 소유권 전부를 이양하지는 않는다. 특히 경영 이양의 시기와 방법에 따라서 후계자의 자립에 역작용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경영주가 은퇴하기까지 후계자의 자립을 위한 수단으로서 경영자산의 소유권 일부를 후계자에게 이전하거나, 부자간 공동경영을 통한 경영권의 점진적인 이양 등을 선택적으로 활용하게 된다.

농업경영의 승계라는 측면에서 볼 때 경영권의 이양과 승계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경영권의 완전 이양을 후계자의 자립으로 간주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 단계에서는 경영주가 일선에서 은퇴한 것을 의미하며, 후계자의 자립이 실현된 것은 아니다.

세번째 단계는 경영주의 사망에 의하여 후계자에게 소유권 이전이 완료되는 단계이다. 즉, 전단계의 경영권에 이어 재산 상속이 완료됨으로써 비로소 후계자에 의한 농업경영의 자립이 실현된다.

위에서 제2단계와 제3단계의 구분은 현실적으로 경영주의 농업경영을 구성하는 자산이 후계자가 경영자로서 자립하기까지 부분적으로 이전되는 것을 상정하여 구분한 것이지만, 그 정도의 차이에 따라서 몇 가지 형태를 세분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절에서 다시 검토하기로 한다.

2.2. 경영승계의 수단과 상속 유형

농가의 상속을 농업경영의 승계라는 일련의 과정으로 파악할 때, 그 수단과 형태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먼저, 재산의 소유권 이전에 대한 법적 수단으로는 현행 법률상 증여와 유산상속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밖에 본래 경영주 소유는 아니지만, 경영주의 적극적인 경영 이양의 수단으로 실질적인 소유권 이전을 위하여 사전적으로 행하는 후계자 명의의 매입도 이 범주에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앞에서 지적하였듯이 소유의 이전과 경영의 승계는 일련의 과정이기 때문에 경영주의 은퇴 시기에 따라서 생전 승계와 사후 승계로 구분할 수 있으며, 다시 승계의 방법과 연계하여 단계적 승계와 완결적 승계로 구

분할 수 있다.

여기서 완결적 승계는 소유의 이전과 경영의 이전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하며, 대개는 '후계자 자립·경영주 은퇴·상속의 완료'라는 세 가지 요소가 동시에 실현된다.

단계적 승계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를 상정할 수 있으나, 소유와 경영의 성격에 따라서 첫째로 경영주의 경영 이양이 복합적으로 진행되는 경우, 둘째로 경영 이양은 일시에 이루어지지만 소유의 이전이 단계적인 경우, 셋째로 소유의 이전이 부분적 또는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등으로 나눌 수 있다.

특히 소유의 이전에 수반되는 재산상속의 수단과 방법을 구분하면, 상속의 결제 수단으로서 유언상속, 합의상속, 법정상속 등이 있으며, 소유의 분할 형태에 따라서 분할(공동)상속, 일괄(단독)상속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또한 소유의 분할에 대해서도 증여에 의한 분할, 유언에 의한 분할, 가족상속계약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여기서 증여에 의한 분할은 즉시에 소유권 이전이 발생하는 생존자간의 행위로서 합의를 근거로 성립하고, 유언에 의한 분할은 행위자의 사망을 조건으로 하는 철회 가능한 단독행위로서 최종적인 의사를 근거로 성립한다.⁶ 그리고 가족상속계약은 사망을 조건으로 한 철회불가능한 생존자간의 행위로 합의를 근거로 성립한다.

위에서 검토한 경영승계의 수단과 상속 형태를 토대로 농가 상속의 기본 유형을 정리한 것이 <표 2-1>이다.

첫번째의 유형 I은 경영주 생전의 완결적 승계로서, 경영주의 생전에 재산 및 경영권을 후계자에게 일괄 이양하고 경영을 자립시키는 형태이다. 이 경우에 소유 이전의 법적 형태는 증여에 의하게 된다.

⁶ 민법 제1065조는 유언의 수단으로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두증서 등의 다섯가지로 규정하고 있다.

표 2-1 농가 상속의 기본 유형

유형구분	경영승계와 자립 및 상속 내용	법적 형태
유형 I	경영주의 생전에 재산 및 경영권을 후계자에게 일괄이양하고 경영을 자립시킴.	증여
유형 II	경영주의 사망 후에 후계자가 경영권과 재산을 일괄이전받아 경영을 자립함.	유산상속
유형 III	경영주의 생전에 경영권과 재산을 일부 이양하여 자립시키고 사망후에 상속을 완료함.	증여 + 상속

두번째의 유형Ⅱ는 경영주 사후의 완결적 승계로서, 경영주의 사망 후에 후계자가 경영권과 재산을 일괄이전받아 경영을 자립하는 형태이다. 이 경우에 소유 이전의 법적 형태는 유산상속에 의하게 된다.

세번째의 유형Ⅲ는 단계적 승계로서, 경영주의 생전에 경영권과 재산을 일부 이양하여 자립시키고 사망후에 상속을 완료하는 형태이다. 이 경우에 소유 이전의 법적 형태는 증여 혹은 유산상속을 병행하게 된다

제 3 장

농가의 상속 관행과 변천 과정

1. 상속 관습과 상속제도의 변천

1.1. 우리 나라의 상속 관습

우리 나라의 상속 관습은 家의 상속을 원칙으로 하여 제사상속, 재산상속, 신분상속으로 나뉘어 형성되어 왔으며, 특히 제사상속은 외국에는 존재하지 않는 우리 고유의 관습으로 알려져 있다.

이하에서는 재산상속을 중심으로 선행연구 결과를 토대로 상속 관습의 변천 내용을 정리하고자 한다.⁷

고대의 상속 관습을 밝혀 주는 자료는 없다. 다만 농경사회가 정착하였던 삼한시대에는 父權家族制를 취하는 것이 보편적이기 때문에 장자상속을 채택하였을 것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특히 재산에 관한 한 공동상속을

⁷ 상속 관습의 변천에 대해서는 김두헌(1949), 최재석(1983), 한국법제연구원(1992)을 주로 참고하였다.

원칙으로 하고, 또한 신분상속이 재산상속보다 우월하였으며, 따라서 신분상속에 따른 남계장자계가 재산상속에서도 우월한 위치를 차지하였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삼국시대의 상속 관습도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으나, 신라의 토지제도에 비추어 볼 때 토지의 개인 재산적인 성격보다는 공동체 소유의 성격이 강했으며, 따라서 공동상속의 형태로 유지되었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고려 이후의 재산상속에 관해서는 사료에 의해 다양하게 검증되고 있으며, 특히 16세기 이후의 상속 관습은 비교적 명확하게 알려져 있다.

고려시대의 상속 원리는 父系가 우위에 있는 非單系로서 여러 형태의 상속제도에서 친손과 외손의 구분이 거의 없었으며, 아들이 없는 경우에는 손자가 상속하는 것이 아니라 생질, 친조카, 사위 등으로 전승되었다. 이러한 비단계적 성격은 점차 약화 내지 제거되어 조선 후기에는 거의 부계로만 강화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⁸

재산상속에서 남계장자의 관행이 확립된 것은 17세기 이후의 일이었으며, 그 이전에는 남녀 또는 장차남의 구별이 없었다고 하는 것이 학계의 정설이다.

1600년대 중엽까지는 장차남과 남녀에 구별없이 철저하게 균분상속이 유지되었으며, 1600년대 중엽부터 1700년대 중엽까지는 균분세를 택한 가족이 많기는 하지만 장남우대, 남녀차별, 남자균분, 여자차별 등의 자녀의 신분에 따라 차등상속을 하는 가족이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났고, 1700년대 중엽부터는 장남우대 및 남녀차별의 경향이 정착되었다.

장남우대 및 남녀차별에 의한 상속제 확립의 원인에 대한 현재까지의 유력한 학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1600년대 중반부터 조상숭배와 제사가 강조됨에 따라 종래의 윤회(輪回)에 의한 제사제도가 퇴색하고 제사 담당자의 지위와 재산의 안정

⁸ 최재석(1983)은 약 120년의 재산상속 기록인 分財記를 통하여 조선시대의 상속관습을 정리하였다.

화를 도모하였다.

둘째로, 1600년대 중엽부터 동족에 대한 관념이 강화되어 동족의 성원이 부계남자로 구성되고 동족의 중심은 제사를 수행하는 장남이나 종가로 전환되었다.

셋째로, 농지의 세분화와 영세화에 의해 세대를 거듭한 자녀수의 증가가 자연히 균분상속제를 붕괴시켰다.

이와 같이 고려시대로 접어들면서 전통사회의 질적 전환이 일어나고, 특히 조선시대에는 宗法制를 근간으로 하는 가족제도가 정착되어 상속제도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면서 변천해 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조선시대 초기의 상속 관습에 대해서 經國大典의 기록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⁹

<經國大典上의 相續原則>

(1) 상속인의 순위와 범위 : 경국대전에는 상속이란 용어는 사용하고 있지 않으나 分給, 分執, 與라는 말로서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재산상속은 未分奴婢로 대표되며 田宅은 노비에 준하도록 하여 상속재산을 이루고 있다. 또한 祠朝, 家舍, 祭田, 墓田은 특별상속재산으로 분류하고 있다.

법정 상속인과 그 순위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피상속인이 유언을 통하여 변경할 수 없으며, 그 순위는 다음과 같다.

제1순위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자녀이다. 여자가 상속하는 경우에는 재가 여부를 묻지 않으며, 여자가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에는 자녀의 직계비속이 代襲相續한다. 이와 같이 자녀의 상속상의 지위가 남자와 동등함이 조선의 재산상속법이 가지고 있는 특색이며 자랑할 만한 점이다.

제2순위 상속인은 처이다. 처가 상속하는 경우는 부에게 사후양자가 선정될 경우 예상한 잠정적인 조치이다. 사후양자가 선정되면 그에게 상속시킨다. 그러나 사후양자가 선정되지 않으면 처의 생존중에 한하고, 사망하면 본중에게 반환한다.

⁹ 이에 대해서는 신영호(1980)를 재인용하였다.

마지막으로 제3순위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本族이다.

상속재산은 父祖로부터 전계받은 것이므로 자녀와 처도 없을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가장 친근한 본족 사이에 상속되며, 그 순위는 가장 가까운 형제자매, 형제자매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의 직계비속이 대신하여 상속한다.

즉, 경국대전은 상속에 참여할 수 있는 상속인을 피상속인의 사촌 이내의 본족에 국한시키고 있다. 그러나 無後者는 양자를 입양하게 하여 그로 하여금 계사와 재산을 승계토록 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본족이 상속할 경우란 거의 없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리고 상속인이 없는 상속재산은 국가에 귀속된다.

(2) 상속분 : 경국대전은 재상상속을 제사상속이나 호주상속을 분리하고 있으며, 제사상속과 호주상속이 엄격한 장자상속인 데 반하여 자녀공동분상속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다만 嫡庶간에는 심한 불균형이 있다. 각 상속인의 법정상속분은 다음과 같다.

1) 적자녀의 상속분 : 부모의 보통 상속재산은 자녀에게 평분하고, 승중자는 평균 상속분외에 제전, 모전 등의 특별상속재산을 단독상속한다. 따라서 적자녀 사이의 상속분은 거의 균분상속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조선초기에는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상속분을 감하게 한 기록이 있다.

2) 첩자녀의 상속분 : 첩자녀는 양첩자녀와 천첩자녀로 구별되어 상속분에 있어서도 차별이 있다. 천첩이라 함은 고사천비·창기로서 첩이 된 자를 말하며 그 이외의 자녀로서 첩이된 자를 양첩이라 한다. 경국대전에 의하면 양첩자녀는 7분의 1, 천첩자녀는 10분의 1을 각각 상속할 수 있다.

3) 편양자의 상속분 : 편양자는 양부의 승중적자의 지위를 취득하게 되므로 적장자의 상속분과 동일하다. 일단 편양자가 선정되면 그 후에 실자가 출생하더라도 그 지위는 변하지 않으며, 실자는 차자가 된다.

4) 편양자 이외의 양자의 상속분 : 조선에는 편양자를 원칙으로 하였으나 예외로 수양자와 특양자를 인정하였다. 수양자녀의 상속분은 양첩자녀와 특양자녀의 상속분은 천첩자녀의 상속분과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5) 적모의 재산에 대한 첩녀의 상속분 : 적모와 첩자녀 사이에는 자연적

혈연관계가 없으므로 첩자녀는 적보의 재산을 상속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의제적 친자관계는 인정되는 것이므로 이를 근거로 양첩자녀는 7분의 1을, 천첩자녀는 10분의 1을 상속할 수 있다.

(3) 유언상속 : 경국대전은 법정상속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유언상속도 인정하고 있다. 유언상속은 본래 혈연주의와 조업사상을 기초로 부모의 자에 대한, 또는 조부모의 계에 대한 유명으로써 인정된 것이었다. 따라서 유언상속의 자유는 점차 그 폭을 넓혀 갔으며, 실제로 있어서도 유언상속이 빈번하게 일어났을 것이다.

이와 같이 유언상속이 임의상속제로의 전환을 가져오게 하였음은 우리에게 유언상속에 있어서 경국대전상의 상속원칙이 어느정도 그 효력을 지녔는지 하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다음으로, 조선후기의 상속 관습에 대해서 일본 통감부의 법전조사국에서 1913년 간행한 慣習調査報告書를 기초로 재산상속에 관한 사항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한국법제연구원 1992, 381-403).

(1) 재산상속은 死者의 유산을 승계하는 것이며, 사자가 제사자인 경우에는 제사상속과 동시에 재산상속이 이루어지고, 그 상속을 하는 자는 제사상속인에게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피상속인의 다른 비속도 역시 그 일부를 승계한다.

(2) 재산상속은 가족이 사망한 경우뿐만 아니라 호주가 사망한 경우에도 인정한다. 가족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가족이 기혼남이면 그 제사자가 사자의 유산을 승계함과 동시에 만일 아우가 있으면 그 역시 유산을 분배 받는다. 즉, 제사상속인 또는 제사자가 되는 자의 재산승계 외에 재산상속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다.

(3) 재산상속인은 在家者에 한하고 타가에 있는 자는 재산상속인이 될 수 없다. 孫은 재산상속인이 될 수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재산상속인이 되어야 할 자가 이미 사망한 경우에는 그 자식이 대리하여 父의 상속분을 받을 수 있다.

(4) 호주가 사망한 경우의 재산상속에서는 재산상속인이 1인이면 그 유

산의 1/3을 받는 것이 관례이다. 만일 2인 이상이 있으면 제사상속인이 1/2을 승계하고 나머지 1/2을 재산상속인이 평분한다.

(5) 유산상속인이 2인 이상이면 상속재산은 각상속인의 공유에 속하는 것이 아니고 그 분할시까지의 제사자의 소유로 귀속되며, 분할 집행 후에 비로소 각상속자의 소유가 된다.

(6) 여자의 재산상속분은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다만 혼인시에 다소의 재산을 증여받는 것이 관례이다.

(7) 유산분할의 방법은 피상속인이 미리 정하는 경우에 이를 따라야 하며, 특별히 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적절히 분할한다. 만일 분할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문중의 의견을 따르도록 한다.

(8) 상속인이 제사상속인 또는 재산상속인임을 불문하고 그 상속을 포기할 수는 없다. 특히 제사상속인은 제사에 대한 의무를 가진다.

(9) 유언은 구두 또는 서면으로 하며, 구두인 경우에는 가족 등 근친을 모아두고 하고, 서면인 경우에는 자필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 통례이다.

(10) 상속인이 받아야 할 遺留分에 대한 관습은 없으며, 따라서 피상속인이 유산을 감소한 경우에 상속인이 그 감쇄를 청구할 수 없다.

2.2. 상속법제의 성립

우리 나라의 상속법제는 전통적인 관습법을 기본으로 하면서 프랑스대혁명에 의하여 확립된 공동균분상속제에 근거하여 제정되었다.

프랑스대혁명은 이른바 민권 확립의 계기로 작용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공동균분상속을 원칙으로 하는 근대적인 상속제를 성립시켰다. 우리 나라 뿐만 아니라 현재 거의 모든 나라들이 공동균분상속형태를 채택하고 있으며, 이는 현대 상속권의 한 근거로서의 상속제도의 사회보장적 역할에 근거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다.

1958년에 제정된 우리 나라의 민법에서도 상속제도의 입법 원칙은 공동상속 원리를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그 몇 가지 특징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제사상속을 법률제도에서 제거한다.

둘째, 호주상속과 재산상속을 분리한다.

셋째, 재산상속인의 범위와 순위는 父系를 기본으로 하여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근친의 순으로 한다.

넷째, 배우자의 상속권을 확립한다.

다섯째, 상속분은 균분을 원칙으로 하되 여자의 상속분에는 차등을 둔다.

여섯째, 遺留分은 인정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그 후 1977년의 법 개정에서 의하여 특별수익자의 상속분 조정(제1008조), 상속분의 남녀 평등화와 처의 상속분 확대(제1009조), 유류분 제도의 신설(제1112조 및 1118조)등이 이루어졌다.

현행 법률상 재산상속에 대한 상속의 순위와 상속인의 범위는 제1순위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제2순위가 피상속인의 직계존속과 처, 제3순위가 형제자매, 제4순위가 8촌 이내의 방계혈족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상속분에서 장남을 우대하고 아들과 딸 사이에 차등을 두며, 출가한 딸에게도 재산을 분배하되 출가전과 출가후에 차등을 두도록 하고 있다.

동순위의 상속분은 균분상속을 원칙으로 하여 상속분은 동순위에 있는 자에 제한없이 적용되지만, 호주상속(5할 가산, 묘토, 농지, 임야와 족보, 제구 등 특별상속재산의 단독상속)과 출가녀(남녀불균형상속)에 대해서는 공동균분상속의 예외가 인정된다.

한편, 농지상속에 대해서는 민법상의 재산상속 규정과 농지개혁법 제15조의 가산상속 규정이 존재하지만, 비농민자녀에게까지 균분상속되는 관습법의 현실을 인정하는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¹⁰

특히 그동안의 상속분쟁에 대한 대법원 판례에서도 상속으로 인한 비농

¹⁰ 농지개혁법 제15조는 “분배받은 농지는 분배받은 농가의 대표자 명의로 등록하고 가산으로 상속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여기서 말하는 농가의 대표자가 누구인지, 가산 상속의 의미는 법률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상속으로 인한 농지 취득과 耕者有田 원칙과는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 등에 관한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민의 농지취득에 대해서 명확하고 일관적인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을 부인할 수 없다.

이러한 과정에서 결과적으로 1996년부터 발효되는 농지법에서는 비농민의 상속농지 취득을 인정(단, 1ha까지 면적 제한)함으로써, 그동안 제기되어 온 농지 세분화의 제도적 원인을 거의 해소하지 못하게 된 셈이다.

마지막으로 상속제도와 관련하여 1994년 개정된 상속세법(1994. 12. 22 법률 4805호, 1995년 1월 1일 시행)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농어민의 상속공제(제11조의 3)는 자경농민인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중 농지, 초지, 산림지의 가액을 상속세 과세 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을 주내용으로 하고 있다.

즉, 상속세의 공제액으로서 면적한도는 농지 9,000평 이내, 초지 45,000평 이내, 산림지 90,000평 이내(20년 조림지는 30만평), 어선 20톤 미만, 어장(어업권) 10ha 미만으로 하며, 금액은 주택공제 등 타 물적공제와 합하여 1억원을 한도로 하고 있다.

또한 영농후계자인 상속인에 대해서는 특별공제(제11조의 3, 제2호)를 인정하여 상속세의 부담을 완화하고 있다.

즉, 일정한 요건을 갖춘 영농상속인에 한하여 농지등 상속공제대상 재산 가액이 타 물적공제와 합하여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부분에 한하여 1억원(임업후계자는 2억원) 한도내에서 추가하여 공제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해당하는 영농상속인 요건은 상속개시일 2년전부터 농어업에 종사하는 자 및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한 농어민후계자이다.

2. 현대의 상속 관행과 의식구조

2.1. 선행연구의 조사결과

사회학 연구에서는 가족제도와 상속 관습을 연계하여 조사하였는데, 그 몇 가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김택규(1975)는 직계가족의 전형적인 상속제도가 장자우대임을 지적하였으며, 이광규(1975)는 가계의 계승이 한국 가족제도의 특질임을 주장하면서 우리 나라 상속제도는 남자우대 불균등 상속을 원칙으로 하지만 재산이 충분하면 균분에 가깝게, 재산이 불충분하면 장남에게 거의 전부를 상속하는데 단독상속은 아니고 또한 여자는 농지상속에서 제외된다고 하였다.

특히 이광규(1990)는 우리 나라의 보편적인 상속 관습이 제주도를 제외하고는 장자우대 불균등 상속임을 지적하고, 가족의 사회적 지위와 경제력에 따라서 단독상속과 균분상속이 나뉘어진다고 사례조사를 통하여 실증하였다. 즉, 사회적 지위도 높고 경제적으로 부유한 집은 형제들간에 비교적 균분에 가까운 재상상속을 하며, 반대로 사회적 지위나 경제력이나 모두 낮은 경우에는 장남에게 재산이 집중된다는 것이다.

한편, 법학 연구에서는 상속에 의한 농지세분화 과정을 중심으로 조사하였는데, 조사의 연대별로 그 몇 가지를 들면 다음과 같다.

한국토지경제연구소(1966)는 농지제도 실태조사의 일환으로 상속 관행을 조사하였는데, 이 조사는 농지개혁 이후 농지상속이 공동상속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음을 처음으로 밝힌 조사이다.

그러나 지역에 따라서는 공동상속이 주류가 아닌 경우도 발견된다. 하나의 사례이지만, 이 봉(1972)은 1961-71년간 전북 완주군 2개 마을조사를 통하여 재산의 소유권 이전이 발생한 총 107호 중에서 생전의 재산분할이 43.9%로 절대로 많으며, 상속 형태는 단독상속이 83.3%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와 같은 사례조사가 있는 반면에, 오늘날의 재산상속 관행이 주로 공동상속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은 그 후의 많은 연구에서 밝혀지고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커다란 논란이 제기되지 않는다.

전국적인 상속 관행을 조사한 연구 결과에서는 공동상속을 우리 나라의 보편적인 상속 형태라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김용한(1974)과 최달곤(1975)은 전국 조사를 집계하여 공동상속이 우위에 있음을 밝히고 있다.

특히 김용한(1974)은 1970-73년 3개년간 전국적으로 2, 101호를 설문 조사한 결과를 집계하여 그 중에서 공동상속이 72.4%, 단독상속이 27.6%이며, 공동상속의 비율이 도시지역 84.0%, 농촌지역 69.3%이고, 공동상속의 경우에 장남의 상속분상의 우선 원칙이 존중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이 조사에서는 농지상속을 받은 시점에서 공동상속과 단독상속을 구분하였는데, 1946-57년에는 단독상속과 공동상속의 비율이 1:1 정도였으나, 그 후 1960년까지는 3배, 1965년까지는 11배, 1972년까지는 10배 정도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어떻든 위의 몇 가지 조사에서도 대체로 유사한 결론을 얻고 있듯이, 공동상속의 관행과 상속에 의한 농지 취득이 농지의 세분화 내지는 영세화 경향을 조장하고 있다는 사실은 상속제도의 당면 과제임에 틀림 없다.

표 3-1 선행연구에 의한 농지상속 형태

선행 연구 와 발 표 년 도	단 독 상 속	공 동 상 속
한국토지경제연구소, 「한국 농지제도연구보고」, 1966	26.1 %	73.9 %
최달곤, 「재산상속법의 변천과 한국의 실태」, 1970	23.0	77.0
김용한, 「농지입법론」, 1974	31.0	69.0
최달곤, 「한국의 재산상속과 농지」, 1975	27.6	72.4

2.2. 본연구의 조사에 의한 재산상속 관행

이 연구에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현지통신원을 대상으로 농가 상속에 관한 지역의 보편적인 관행을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따라서 여기서 분석하는 설문조사의 결과는 현지통신원이 거주하고 있는 마을의 상속 관행이며, 조사 농가의 구체적인 재산상속 실태에 대해서는 제4장에서 분석하게 됨을 밝혀 둔다.

먼저 마을의 장자 상속의 관행에 관하여 큰 아들이 농사를 물려 받느냐는 인식이 남아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의무감을 가질 정도로 강하게 남아 있다는 응답이 14.3%, 대체로 그렇게 생각한다는 응답이 49.5%, 거의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응답이 34.2%로 나타났다<표 3-2>.

마을의 농지는 대체로 누구에게 상속되고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장자가 단독상속한다는 응답이 8.3%, 자식들에게 분할상속한다는 응답이 27.5%, 분할하되 장자 몫이 많다는 응답이 48.2%, 각양각색이라는 응답이 14.0%로 나타났다<표 3-3>.

표 3-2 장자 상속에 대한 관행

의무감이 강하게 남아 있다	대체로 장자가 상속하는 편	거의 없다	무 응 답	합 계
124 (14.3)	430 (49.5)	297 (34.2)	18 (2.0)	869 (100.0)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현지통신원 조사결과(1995. 8)

표 3-3 농지 상속의 형태에 대한 관행

장자의 단독상속	분할상속	분할하되 장자 우선	각양각색	무 응 답	합 계
72 (8.3)	239 (27.5)	419 (48.2)	122 (14.0)	17 (2.0)	869 (100.0)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현지통신원 조사결과(1995. 8)

표 3-4 농지 승계의 수단에 대한 관행

생전증여	유산상속	증여+상속	매 각	무 응 답	합 계
286 (32.9)	248 (28.5)	259 (29.8)	62 (7.1)	14 (1.6)	869 (100.0)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현지통신원 조사결과(1995. 8)

표 3-5 주택 승계의 형태에 대한 관행

후계자 단독	분할상속	매 각	기 타	무 응 답	합 계
519 (59.7)	178 (20.5)	65 (7.5)	88 (10.1)	19 (2.2)	869 (100.0)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현지통신원 조사결과(1995. 8)

표 3-6 농기계 또는 가축 승계의 형태에 대한 관행

후계자 단독	분할상속	매 각	기 타	무 응 답	합 계
511 (58.8)	118 (13.6)	174 (20.2)	33 (3.8)	33 (3.8)	869 (100.0)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현지통신원 조사결과(1995. 8)

최근에 들어서 농지가 어떠한 과정으로 상속되고 있는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생전에 자식에게 증여한다는 응답이 32.9%, 사망 후 유산으로 상속한다는 응답이 28.5%, 증여와 상속이 복합적이라는 응답이 29.8%, 매각한다는 응답이 7.1%로 나타났다<표 3-4>.

주택이 어떻게 상속되고 있는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영농후계자가 상속한다는 응답이 59.7%, 자식들에게 분할상속한다는 응답이 20.5%, 타인에게 매각한다는 응답이 7.5%로 나타났다<표 3-5>.

농기계나 가축의 상속에 대해서는 영농후계자가 상속한다는 응답이 58.8%, 자식들에게 분할상속한다는 응답이 13.6%, 타인에게 매각한다는 응답이 20.2%로 나타났다<표 3-6>.

표 3-7 비농민 상속자의 농지 관리에 대한 관행

형제나 친척이 사용대차하여 관리	형제나 친척에게 매각 또는 임대	남에게 매각 또는 임대	기 타	무 응 답	합 계
347 (39.9)	366 (30.6)	218 (25.1)	22 (2.5)	16 (1.8)	869 (100.0)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현지통신원 조사결과(1995. 8)

표 3-8 재산상속을 둘러싼 분쟁 여부

종종 있다	대개 합의로 해결한다	기 타	무 응 답	합 계
46 (5.3)	689 (79.3)	91 (10.5)	43 (4.9)	869 (100.0)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현지통신원 조사결과(1995. 8)

상속자가 비농민인 경우에 그 농지는 어떻게 하는 편이냐는 질문에 대해, '농사짓는 형제나 친척이 사용대차하여 관리한다' 39.9%, '형제나 친척에게 매각 또는 임대한다' 30.6%, '타인에게 매각 또는 임대한다'는 응답이 25.1%였다<표 3-7>.

마지막으로, 재산상속을 둘러싼 분쟁 발생에 대해서는 법정까지 가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응답이 5.3%, 대개 합의로 해결한다는 응답이 79.3%로 나타났다<표 3-8>.

3. 농지상속 관행의 변화와 성격

농가의 상속 관행을 조사함에 있어서 연구자의 가장 큰 관심은 농지의 상속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상속 형태가 공동상속이나 단독상속이냐 하는 것이다.

표 3-9 상속받은 연대별 농지상속의 형태

단위: 호, %

	단독상속	분할상속	합계
1950년 이전	22 (56.4)	17 (43.6)	39 (100.0)
1950 ~ 59	47 (54.7)	39 (45.3)	86 (100.0)
1960 ~ 69	92 (47.9)	100 (52.1)	192 (100.0)
1970 ~ 79	81 (46.3)	94 (53.7)	175 (100.0)
1980 ~ 89	49 (45.3)	59 (54.6)	108 (100.0)
1990년 이후	16 (47.0)	18 (52.9)	34 (100.0)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현지통신원 조사결과(1995. 8)

앞서 <표 3-3>에서 농지 상속에 대한 마을의 관행을 조사한 바에 의하면 공동분할상속이 압도적으로 우세한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선행연구에서 1970년대까지 조사된 결과와 대체로 맥락을 같이 하는 것이며, 조사 시점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공동상속의 성향이 지켜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구체적으로 시대별로 농지 상속의 형태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를 파악하고자 현지통신원 설문조사 농가 중에서 농지를 상속받은 농가 634호를 대상으로 상속받은 연도에 따라서 상속 형태를 집계하였다. 그 결과는 <표 3-9>와 같다.

연대 구분은 편의상 10년 단위로 하였는데, 먼저 1950년 이전에 상속받은 농가 39호 중에서 단독상속은 56.4%이고 분할상속이 43.6%의 비율로 나타났으며, 1950~59년에는 각각 54.7%와 45.3%, 1960~69년에는 47.9%와 52.1%, 1970~79년에는 46.3%와 53.7%, 1980~89년에는 45.3%와 54.6%, 그리고 1990년 이후에는 47.0%와 52.9%로 나타났다.

이 집계 결과는 대체로 1960년까지는 상대적으로 단독상속의 형태가 많았으나 60년대 이후에는 공동(분할)상속이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선행연구와 대체로 일치한다. 특히 여기서 60년대 이전에 단독상속이 많았다는 사실은 흥미로운 결과로 보인다.

선행연구에서 검토하였듯이 농지상속에 관한 실태조사는 그리 많지 않으며, 더욱이 1960년대 이전의 상속 실태에 대한 비교는 어려운 실정이지만, 김용한(1980)의 조사에서 파악한 1946~57년의 단독상속 47.8%, 공동상속 52.2%라는 수치와 비교할 만하다.

다만, 이 조사가 전국적인 조사라고는 하지만, 여기서 파악된 실태를 일반화하는데는 몇 가지 무리한 측면이 없지 않다. 즉, 이 조사의 표본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현지통신원으로서 비교적 농촌의 여론지도층에 해당한다는 점, 선친의 농지를 상속받아 현재까지 농업을 계속하고 있는 건실한 농가라는 점, 그리고 오랜 과거의 상속 형태를 현재 시점에서 조사했다는 점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어떻든 조사 시점이나 조사 방법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대체적인 추세로 나타나는 것은 우리 농촌에서 공동상속의 원칙이 지켜짐으로써 상대적으로 분할상속이 널리 행해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특히 그래도 농지개혁 이전에는 단독상속이 많았으나, 1960년대 이후부터는 공동상속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렇게 공동상속이 증가하는 이유에 대해서 몇몇 선행연구에서는 대가족 제도의 해체와 교통기관의 발달을 지적하고 있다.¹¹ 즉, 농지가 지니는 家産 개념의 지양과 더불어 점차 농지를 단순한 재산적 가치만을 지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여기에 더하여 개인주의 사상이 농촌에 파급되면서 개인의 권리 의식이 강화되어 공동상속의 원칙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는 견해이다.

이러한 견해를 종합적으로 정리하면, 1960년대 이후 농지의 분할 상속을

¹¹ 이에 대해서는 김용한(1974), 최달곤(1975), 신영호(1980) 등을 참고할 수 있다.

증가시켜 온 원인으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지적할 수 있다.

첫째는 가족제도의 변화이다. 60년대 이후의 이농으로 인하여 농촌사회의 보편적인 대가족제도가 해체되고 핵가족화가 진전되었다는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며, 이러한 분가 경향은 한편으로는 영세농 창출에도 기여한 것으로 사료된다.

특히 농가호수가 감소하기 시작한 1967년까지는 농외취업 기회의 부족 등 농촌의 과잉인구가 타산업으로의 진출이 제한된 가운데 독립적인 생계를 위하여 부모로부터 분가하여 별도의 농가를 창설하는 경향이 강했던 것으로 사료된다.

둘째는 농가의 성격 변화이다. 우리 농업은 전통적으로 가족 협업을 통하여 공동으로 家産과 가계를 유지한다는 측면에서 ‘家’에 대한 관념이 강했으나, 이러한 공동체적 의식이 약화되면서 가산은 단순한 재산적 가치를 지니는 것으로 인식되기에 이르렀으며, 농업경영을 통한 가계 유지는 부모세대인 1세대에 한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최근에는 분가나 출가하는 자녀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필요한 경우에 재산을 증여하고 가계와 농업을 승계할 영농후계자에게 대해서만 농지와 주택을 포함하여 가산을 물려 주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영농후계자가 없는 고령농가인 경우에는 상속보다는 노후생활의 안정을 위하여 농지를 매각하고 현금 자산을 운용하는 사례도 발견된다.

셋째는 농지가격의 변화이다. 특히 70년대 이후 농지가격의 급격한 상승으로 인하여 재산적 가치를 의식한 분할 상속이 강하게 표출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도시근교와 같이 상대적으로 지가가 높은 지역일수록 공동상속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이러한 경향을 반증하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분할상속 경향을 시대별로 보면, 1960년대 초반까지는 생계 유지를 위한 분가 성격이 강하였고, 70년대 중반까지는 이농과 핵가족화의 영향이 강하였으며, 70년대 후반부터는 지가 상승에 따른 농지의 재산적 보유 경향에 의하여 분할 상속이 증가되어 온 것으로 판단된다.

앞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우리 농촌사회에는 아직까지 공동상속 우위의

농지상속 관행이 보편적으로 행해지고 있으며, 이러한 관행이 농지의 세분화 내지는 영세화를 조장하고 있다는 것은 선행연구에서도 이미 지적한 바와 같다.

또한 상속으로 인하여 농지가 분할되고 영세화되는 현상은 우리 나라만에 국한된 현상이 아니며, 공동상속제를 채택하고 있는 여러 나라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외국에서는 농지 상속을 일자상속으로 유도하기 위한 대응책이 다각도로 모색되어 왔으며, 그 결과 상당한 성과를 얻고 있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¹²

¹² 신영호(1980)는 각국마다 분할 상속을 방지하기 위한 특별입법과 농업정책이 제시되고 있는데 비하여 우리나라는 학계의 지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등한시해 온 실정이라고 적시하였다.

제 4 장

농가 상속과 경영승계의 실태분석

1. 조사농가의 개황

농가의 상속과 경영승계에 대한 전국적인 관행과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당연구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현지통신원 2,200명을 대상으로 부록의 설문지를 작성하여 7월 10일에 발송하고 8월 31일에 회수를 마감하였다. 그리고 회수된 조사표 중에서 부실 기재된 것을 제외하고 총 869개를 분석에 이용하였다.

조사농가의 도별 분포를 <표 4-1>에서 보면, 전남이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는 경북, 경남, 충남, 전북, 경기, 충북 등의 순으로 분포하고 있다.

표 4-1 조사농가의 도별 분포

단위: 호, %

구 분	경 기	강 원	충 북	충 남	전 북	전 남	경 북	경 남	제 주	계
표 본 농 가 수	87 (10.0)	54 (6.2)	53 (6.1)	117 (13.5)	89 (10.2)	159 (18.3)	150 (17.3)	143 (16.5)	17 (2.0)	869 (100.0)

표 4-2 조사농가의 연령별 분포

단위: 호, %

구 분	30세 미만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 이상	계
표 본 농 가 수	8 (1.0)	35 (40.3)	117 (13.5)	360 (41.4)	349 (40.2)	869 (100.0)

표 4-3 조사농가의 경지규모별 분포

단위: 호, %

구 분	1ha미만	1-2ha	2-3ha	3-4ha	4-5ha	5ha	계
표 본 농가수	222 (25.5)	377 (43.4)	167 (19.2)	53 (61.0)	31 (3.6)	19 (2.2)	869 (100.0)

표 4-4 조사농가의 지대별 분포

단위: 호, %

구 분	도시근교	평 야 지	중산간지	산간지	계
표 본 농 가 수	113 (13.0)	355 (40.9)	158 (18.2)	243 (28.0)	869 (100.0)

조사농가의 연령별 분포는 50-59세가 360명으로 가장 많고, 60세 이상도 349명이나 되어 50세 이상의 분포가 전체의 81.6%를 차지하고 있다. 조사농가는 오늘날의 농촌 고령화 현상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조사농가의 경지규모별 분포는 1-2ha가 377호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1ha 미만 농가 222호, 2-3ha 규모의 농가 167호의 순이었다.

조사농가의 지대별 분포는 평야지가 356호로서 가장 많고 산간지가 243호, 중산간지가 158호, 도시근교가 113호 등의 순으로 분포하고 있다.

조사농가의 총 경지면적에서 상속받은 면적의 비율은 10% 미만이 316호로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는 50-60%가 263호로서 상속면적 비율은 양극으로 나누어지는 형태를 보이고 있다.

표 4-5 조사농가의 상속면적 비율별 분포

단위: 호, %

구 분	10%미만	10-20%	20-30%	30-40%	40-50%	50-60%	계
표 본 농 가 수	316 (36.4)	80 (9.2)	80 (9.2)	77 (8.9)	53 (6.1)5	263 (30.3)	869 (100.0)

표 4-6 조사농가의 주작목별 분포

단위: 호, %

구 분	벼농사	식량 작물	채 소	과 수	화 훼	축 산	특 작	기 타	계
표 본 농가수	651 (64.6)	62 (7.1)	37 (4.3)	86 (9.9)	5 (1.0)	49 (5.6)	59 (6.8)	10 (1.2)	869 (100.0)

조사농가의 주작목별 분포는 벼농사가 561호로서 가장 많고 과수, 식량작물, 특작 등의 순으로 분포하고 있다.

2. 농가 상속의 수단과 형태

2.1. 농가 상속의 수단

농가를 상속하는 방법, 즉 상속의 수단은 대체로 세 가지 형태로 구분할 수 있다.

첫번째 형태는 생전에 유언에 의해 특정의 지분을 특정 자녀에게 상속할 것이라는 사실을 구두 또는 문서로서 구체적으로 지시하는 방법이다. 이를 유언상속이라고 칭하기로 한다.

두번째는 유언이 없이 사망하는 경우에 일반적으로 가족간의 합의를 통해 자녀 상호간의 상속 대상과 비율을 정하는 방법이 있다. 이를 합의상속

으로 표현하기로 한다.

셋째 형태는 유언도 없고 또한 가족간의 합의가 실패했을 경우이며, 이때에는 대개 법정의 판결을 모색하게 된다. 이를 법정상속으로 칭하기로 한다.

이러한 분류의 기준에 따라 현재 농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농가 상속의 수단을 정리한 것이 <표 4-7>이다. 이를 보면, 생전에 유언에 의해 자녀들에 대한 상속대상과 비율을 정하는 경우(13.6%)보다 유언없이 사망하여 가족간의 합의를 통해 상속대상과 비율을 정하는 합의상속(55.4%)이 농가 상속의 주요한 수단이 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농가 상속의 수단을 지역별로 보면, 유언에 의한 상속은 제주도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경기도와 강원도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가족간의 합의에 의한 상속은 전지역에서 40-50% 수준으로 비교적 고르게 나타나고 있고, 법정 상속은 경기도와 전북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서울이라는 거대도시와 위성도시들을 둘러싸고 있는 경기도는 지리적 여건상 도시근교 농업이 발달하고 지가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게 형성되고 있는 지역이다. 그리고 전북은 우리 농업의 대표적 수도작 생산지역이며 전업농이 많이 분포하는 지역이라는 점에서, 경기도와 전북지역의 농가 상속에 있어서 법정상속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음은 주목되는 점이라 하겠다.

경기도와 전북지역의 농가 상속이 주로 법정 상속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그 하나의 원인으로서는 농지의 재산가치와 생산요소로서의 가치 문제에도 연관되어 있다고 보인다.

특히 경기도는 농지의 재산적 가치가 중요시되고 이에 따라 상속농지를 둘러싼 자녀들의 재산적 이해 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될 소지가 있다. 또한 전북지역은 농지의 기반조성이 잘 이루어져 있고 생산수단으로서의 농지의 가치가 다른 지역보다 높다고 볼 때, 전업농을 지향하는 복수의 자녀가 있을 경우 농지확보 차원에서 상속이 법정까지 비화될 소지가 있다는 점이

표 4-7 재산 상속의 수단

도 별	유언상속	합의상속	법정상속	기 타	합 계
경 기	8.1	74.2	12.9	4.8	62 (100.0)
강 원	8.3	52.8	8.3	30.6	36 (100.0)
충 북	25.7	60.0	0.0	14.3	35 (100.0)
충 남	23.2	63.2	8.4	5.3	95 (100.0)
전 북	17.4	62.3	10.1	10.1	69 (100.0)
전 남	13.8	65.9	8.5	11.6	129 (100.0)
경 북	25.0	63.3	2.5	9.2	120 (100.0)
경 남	14.7	63.9	6.5	14.8	108 (100.0)
제 주	38.5	61.5	0.0	0.0	13 (100.0)
합 계	120 (18.0)	427 (64.0)	47 (7.1)	73 (10.9)	667 (100.0)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현지통신원 조사결과(1995. 8)

배경으로 해석된다.

그리고 표로 나타내지는 않았으나 조사한 바에 따르면 유언상속이 있을 경우에 그 방법을 구두에 의한 것인가 유언장에 의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구두에 의한 경우가 23%, 문서로서 유언장에 의해 상속 대상과 비율을 결정하는 경우는 2%로서 구두에 의한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2.2. 농가 상속과 재산의 분할

<표 4-8>은 재산상속의 분할 형태를 조사한 결과이다. 이에 의하면 전국 평균적으로는 분할상속이 단독상속의 비율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단독상속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는 지역은 충청남도이다.

반면에 분할상속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는 지역은 제주도이며, 그 비율은 타지역에 비하여 월등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 제주도는 전통적으로 재산의 분할상속이 관행화되어 있는 지역으로 알려져 있으며, 본 조사에서도 이러한 관행이 그대로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¹³

재산 상속의 형태를 가족구성 형태별로 보면, 단독세대는 분할상속이 많

표 4-8 재산 상속의 형태

구 분	단 독 상 속	분 할 상 속	합 계
경 기	45.2	54.8	62 (100.0)
강 원	61.1	38.9	36 (100.0)
충 북	51.4	48.6	35 (100.0)
충 남	57.9	42.1	95 (100.0)
전 북	50.7	49.3	69 (100.0)
전 남	45.7	54.3	129 (100.0)
경 북	41.7	58.3	120 (100.0)
경 남	47.2	52.8	108 (100.0)
제 주	7.7	92.3	13 (100.0)
단독세대	44.6	55.4	428 (100.0)
부모동거2세대	54.4	45.7	184 (100.0)
부모동거3세대	64.7	35.3	17 (100.0)
기 타	44.7	55.3	38 (100.0)
전업농가	48.8	51.2	555 (100.0)
겸업농가	42.9	57.1	112 (100.0)
도시근교	43.0	56.9	79 (100.0)
평 야 지	46.0	54.0	287 (100.0)
중산간지	41.7	58.3	120 (100.0)
산 간 지	56.9	43.1	181 (100.0)
Total	319 (47.8)	348 (52.5)	667 (100.0)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현지통신원 조사결과(1995. 8)

고 부모동거 2세대는 단독상속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부모동거 3세대, 즉 조부모와 부모 및 자녀가 함께 동거하는 세대는 단독상속의 비율이 분할상속보다 2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우리의 상속 관행이 장자우선 상속이며, 장자가 부모를 봉양하며 살아야 한다는 전통적인 가족문화에 기초한 결과로 해석된다. 즉, 부모를 봉양하는 집은 대체로 장남일 비율이 높고, 장남은 전통적인 장자우선 상속

¹³ 신영호(1980)의 조사에서도 제주도에는 공동상속 관행이 많은 것으로 밝히고 있다.

관행에 따라서 부모의 농가 및 농지를 단독으로 상속받았을 확률이 크기 때문이다.

상속의 형태를 전·겸업농에 따라 구분하여 보면 전·겸업농 구분할 것 없이 분할상속의 비율이 높으나, 전업농은 단독상속의 비율이 겸업농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전업농과 단독상속과의 관계가 반드시 정(+)의 함수 관계로서 나타난다는 것은 확인할 수는 없으나, 1ha 정도의 평균 경영규모하에서는 분할상속에 의한 경영경지규모로서는 농업으로 전업화하기는 힘들다고 보인다. 따라서 영세분할 상속된 농지로는 농업에 전업하기보다는 농외소득에 의한 겸업화를 지양하는 것으로 추론되나, 분할상속이 반드시 영세농으로 정착시키는 가장 큰 요인이라고는 말할 수 없다.

실제로 대규모 영농을 실현하고 있는 많은 농가가 부모로부터의 단독상속에 의해 농지의 규모화를 실현시킨 것이 아니라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즉 부모의 사후 농지의 꾸준한 매입으로 경영경지를 확장시킨 사례를 많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3. 경영승계와 자립 과정

3.1. 경영승계의 현황

현재의 농가가 언제부터 농업을 영위하여 왔는가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를 <표 4-9>에서 보면, 대부분의 조사농가가 조부로부터 경영승계가 이루어지고 있다. 전체 조사농가의 85%가 대대로 농사를 지어오고 있으며, 당대에 신규로 창설된 농가(4%)는 매우 적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본인이 직접 신규로 농가를 창설한 비율이 그나마 상대적으로 높은 곳은 강원도와 제주도이며, 지대별로는 도시근교가 본인 당대의 창설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전·겸업별로는 겸업농이 전업농보다 당대에 창설되는 비

표 4-9 경영승계의 현황

구 분	조부부터 (%)	부모부터 (%)	본인부터 (%)	무 응 답 (%)	계 호, (%)
경 기	86.2	6.9	6.9	0.0	87 (100.0)
강 원	75.9	14.8	9.3	0.0	54 (100.0)
충 북	83.0	11.3	5.7	0.0	53 (100.0)
충 남	86.3	12.0	1.7	0.0	117 (100.0)
전 북	84.3	14.6	1.1	0.0	89 (100.0)
전 남	81.1	15.7	2.5	0.6	159 (100.0)
경 북	86.0	9.3	4.7	0.0	150 (100.0)
경 남	87.4	7.7	4.9	0.0	143 (100.0)
제 주	88.2	0.0	11.8	0.0	17 (100.0)
도 시 근 교	79.0	15.9	7.1	0.0	113 (100.0)
평 야 지	85.6	11.3	2.8	0.3	355 (100.0)
중 산 간 지	86.7	8.2	5.1	0.0	158 (100.0)
산 간 지	84.8	10.7	4.5	0.0	243 (100.0)
전 업 농	85.6	10.5	3.8	0.1	716 (100.0)
겸 업 농	79.1	14.4	6.5	0.0	153 (100.0)
계	734 (84.5)	97 (11.2)	37 (4.3)	1 (0.1)	869 (100.0)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현지통신원 조사결과(1995. 8)

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와 같이 농업에서 전통적인 가업승계 형태로서 선대로부터의 경영승계가 주류를 이루는 것은 단지 우리 농업에서의 관행적 현상으로만 설명할 수는 없다. 이 같은 현상은 농업경영이 전통적으로 가족경영이 그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에 기초를 두고 있지만, 가족경영이 기업경영과는 다른 속성을 지니는 가족경영의 고유한 특성에 기인함도 간과할 수 없다.

즉, 가족경영의 승계라는 근저에는 농업이 상속이나 증여에 의하지 않고는 신규 창설에 필요한 비용이 많이 들며, 또한 선대로부터 경영을 승계함으로써 가족농의 경영교육 기능, 다시 말해서 영농기술이나 경영자 능력 등이 포괄적으로 승계된다는 유리성이 개재되어 있는 것이다.¹⁴

상속이나 증여에 의하지 않은 신규 농가의 창설을 위해서는 농가, 농지, 농기구 등의 구입을 위한 상당한 액수의 초기투자를 필요로 한다. 뿐만 아니라 농지구입의 압박을 피하기 위해서 전부 임대차에 의존한다고 하더라도 농업에서는 작물재배에 필요한 기술적·경험적 지식을 필요로 한다.

그리고 신규 참여자의 농업노동에의 적응 등이 결합하여 이런 점들이 농업이라는 산업으로의 진입을 가로막는 진입장벽의 역할을 하게 된다. 그러나 가족경영으로부터 생전 증여의 형태로 승계하는 경우 대부분 선친과 같이 농사를 짓는 가운데 이미 농업의 작물생육의 특질 등의 농학적 지식이 경험적으로 축적되게 된다.

이러한 경험적 지식이 신규 창설농가에게는 필요한 제교육을 대체하는 효과를 발생한다. 따라서 선대로부터의 경영승계가 우세한 이유로서 특히 가족경영의 교육 기능이라는 본질적인 장점을 지적해도 무리는 없는 것으로 사료된다.

다음으로, 경영승계자의 가족내의 위치를 <표 4-10>에서 보면, 장남에 의한 경영승계가 월등히 많은 비율(82%)을 차지하여 여전히 농업경영의 승계가 장남에 의한 가업승계의 성격을 띠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제주도의 경우만은 장남과 차남의 비율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고 있으며, 이는 제주도의 상속 관행이 장남 위주의 단독상속 관행이 아닌 자녀들에 대한 균분상속 관행에 기인한 결과로 판단된다.

전국 평균치로서 나타나는 장남에 의한 농업경영의 승계 현상은 경영자의 연령별 분포에서는 조금씩 다른 경향을 보이고 있다. 즉, 50세 이상의 연령 계층에 있어서는 장남에 의한 농업경영승계의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으나, 30~40대 계층에서는 차남에 의한 경영승계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이는 농업이 장남에 의한 가업 승계라는 관념이 점점 약해지고 있으며

¹⁴ 가족경영의 경영교육 기능은 가족농의 강점으로 지적되는 사항이기도 하다. 이러한 논의는 稻本志良(1987)을 참고할 수 있다.

표 4-10 경영승계자의 가족내 위치

도 별	장 남 (%)	차 남 (%)	삼 남 (%)	사남이하 (%)	무응답 (%)	계 호, (%)
경 기	56.3	27.6	10.3	4.6	1.2	87 (100.0)
강 원	70.4	20.4	3.7	5.6	0.0	54 (100.0)
충 북	60.4	24.5	3.8	9.4	1.9	53 (100.0)
충 남	63.3	24.8	6.8	5.1	0.0	117 (100.0)
전 북	59.6	30.3	7.9	2.3	0.0	88 (100.0)
전 남	62.0	17.0	11.3	8.2	0.6	159 (100.0)
경 북	65.3	20.0	7.3	6.7	0.7	150 (100.0)
경 남	59.4	21.0	8.4	11.2	0.0	143 (100.0)
세 주	35.3	29.4	17.7	17.7	0.0	17 (100.0)
40미만	54.3	31.4	11.4	2.9	0.0	35 (100.0)
40-49	54.7	33.3	5.1	6.8	0.0	117 (100.0)
50-59	66.4	19.4	6.7	6.9	0.6	360 (100.0)
60이상	59.6	21.5	10.6	7.7	0.7	349 (100.0)
계	535 (61.6)	196 (22.6)	72 (8.3)	62 (7.1)	4 (0.5)	869 (100.0)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현지통신원 조사결과(1995. 8)

장차남의 구별없이 누구든 농촌에 잔류하여 농사를 영위할 자식에게 경영을 승계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음을 반영한 결과로 해석된다. 따라서 영농후계자 확보 비율이 지극히 낮은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앞으로 한층 더 이러한 경향이 강해질 것으로 예상되며, 장남에 의한 가업승계의 비중은 더욱 감소될 것으로 예견된다.

그리고 현재에는 왕성한 교육열에 의하여 장남이 수학 능력이 있는 한 차남이나 삼남에 비해 대학교육까지 시키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농촌과는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으며, 따라서 장남이 영농후계자를 자칭하지 않는 한 오히려 차남과 삼남이 농촌에 잔류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음도 배제할 수 없다.

3.2. 경영승계의 과정

경영승계의 과정은 선친 생존시에 경영을 승계하는 경우와 선친의 사후에 상속을 통해서 경영을 승계하는 두 가지 형태로 나눌 수 있다. 그리고 선친이 생존했을 때 경영승계가 이루어진 경우에 있어서도 선친의 사후에 그 재산이 단독상속이 될 수도 있고 분할상속되는 형태도 있을 수 있다.

즉, 사후의 경영승계에 있어서도 재산의 소유권이 단독상속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와 분할상속에 의한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표 4-11>은 경영승계의 과정, 즉 경영승계자의 자립의 시기를 나타내고 있다. 표에 의하면 경영승계는 선친이 살아있는 동안에 주로 이루어지고 있고, 이는 현재의 농업경영의 자립이 이미 선친의 생존시에 이루어지고 있음을 뜻한다.

표 4-11 경영승계의 형태

구 분	생전 경영승계		사후 경영승계		기 타 (%)	a+c (%)	b+d (%)	계 호,(%)	
	단독 상속(a) (%)	분 할 상속(b) (%)	단독 상속(c) (%)	분 할 상속(d) (%)					
도시근교	17.7	42.6	10.6	2.7	27.4	28.3	44.4	113(100.0)	
평 야 지	22.8	22.8	16.6	6.5	13.5	39.4	47.1	355(100.0)	
중산간지	21.5	21.5	13.3	4.4	15.8	34.8	49.4	158(100.0)	
산 간 지	29.6	32.5	15.2	4.9	17.7	44.9	37.5	243(100.0)	
1ha미만	22.6	32.9	16.7	4.1	23.9	39.2	36.9	222(100.0)	
1-2ha	27.6	36.6	15.1	5.6	15.1	42.7	41.2	377(100.0)	
2-3ha	22.2	49.1	12.6	4.8	11.4	34.7	53.9	167(100.0)	
3-4ha	18.9	43.4	13.2	7.6	17.0	32.1	51.0	53(100.0)	
4-5ha	12.2	48.4	16.1	6.5	16.1	29.0	54.9	31(100.0)	
5ha이상	10.5	52.6	10.5	5.3	21.1	21.1	57.9	19(100.0)	
합	207	341	129	45	147	336	386	869(100.0)	
계	호 (%)	(23.8)	(39.2)	(14.8)	(5.2)	(16.9)	(38.7)	(44.4)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현지통신원 조사결과(1995. 8)

경영승계가 이루어진 후의 재산상속 형태에 있어서는 분할상속 비율이 단독상속 비율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선친의 사망후 경영승계의 과정은 선친의 사망 전의 경우와는 반대로 단독상속 비율이 분할상속 비율을 증가하고 있음도 주목된다.

이러한 경영승계의 과정을 지대별로 보면 도시근교, 평야지, 중산간지의 분할상속이 단독상속을 상회하고 있는데 반해 산간지에서는 단독상속이 분할상속을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산간지의 상속 관행이 다른 지대에 비하여 단독상속의 비율이 항상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산간지의 경영규모는 일반적으로 다른 지대에 비해서 작기 때문에 분할상속을 할 만큼 농지규모가 크지 못하는 것에 기인되는 현상으로 파악된다.

경영승계의 과정을 경지규모별로 보면, 경지규모가 커질수록 단독상속의 경영승계 비중이 작고 분할상속에 의한 경영승계 비중이 크게 나타나고 있다. 이 결과가 의미하는 바는 경지규모와 상속관행은 별로 상관관계가 없음을 나타낸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단독상속이 상속되는 규모가 크고 분할상속은 경지가 분할되기 때문에 경지규모가 작아지며, 따라서 대규모 농가들은 주로 단독상속에 의해 처음부터 규모화에 유리한 조건으로 출발했을 것이라는 선입견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는 경영경지의 규모화는 상속면적의 크기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농지를 매입해서라도 규모화하고자 하는 의지의 결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된다.

3.3. 경영승계의 동기

<표 4-12>는 경영승계가 이루어질때 그 동기가 무엇인가를 본 것이다. 이에 따르면 후계자에게 승계의 동기는 역시 노령에 의해 육체적으로 영농이 어렵게 되어 승계하는 경우가 많으며, 그 다음으로는 결혼 등을 통해 분가를 희망하였기 때문에 생전에 경영승계가 이루어진 경우가 많다. 그리고 적은 비율이기는 하나 아예 농업에 전념시켜 가업을 승계하기 위해 농지의 일부를 승계시켜 농업에 전념케 한 경우도 상당히 나타나고 있다.

표 4-12 주작목별 생전의 경영승계의 이유

주 작 목 별	노령 때문	병환 때문	상속 전제	분가 희망	농업 전념	타사업 참여	기타	무응답	계
벼 농 사	29.5	12.8	6.2	9.6	7.3	1.4	6.2	26.7	561(100.0)
식량작물	29.0	6.4	1.6	8.0	12.9	1.6	11.2	29.0	62(100.0)
채 소	24.3	10.8	5.4	24.3	5.4	0.0	5.4	24.3	37(100.0)
과 수	13.9	11.6	6.9	20.9	9.3	2.3	4.6	30.2	86(100.0)
화 훼	40.0	0.0	0.0	0.0	0.0	0.0	0.0	60.0	5(100.0)
축 산	28.5	4.0	4.0	10.2	4.0	2.0	6.1	40.8	49(100.0)
특 작	15.2	10.1	3.3	10.1	6.7	1.6	10.1	42.3	59(100.0)
기 타	10.0	10.0	0.0	30.0	0.0	0.0	0.0	50.0	10(100.0)
계	231 (26.6)	99 (11.4)	4.8 (5.5)	100 (11.5)	65 (7.5)	13 (1.5)	57 (6.66)	256 (29.5)	869(100.0)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현지통신원 조사결과(1995. 8)

이를 작목별로 보면 노령에 의한 경영승계는 주로 쌀농사와 식량작물, 채소 등 상대적으로 노동집약적이 작목부문이 높으며, 화훼를 제외한 과수, 축산, 특작 등 상대적으로 자본집약적인 부문은 노령에 의한 경영승계보다는 쌀농사 등에 비해 다른 이유의 비중이 높다.

위 조사 결과는 현재의 경영승계에 대한 관행이라기보다는 피조사자인 농민이 과거 승계를 받았을 때의 승계 형태를 나타낸 것이다. 따라서 지금과 같이 수도작 등의 식량작물 부문에서도 기계화가 고도로 진행된 상태에서 노령에 따른 노동의 어려움이 경영승계의 주요 동기로 작용할 것인가는 의문이다.

4. 후계자 실태와 경영 이양

4.1. 경영승계를 위한 후계자의 실태

농업경영의 승계는 승계를 위한 농가자산의 존재와 후계자의 존재라는

표 4-13 경영승계를 위한 후계자 확보 상황

구 분	후계자있음		후계자 미 정 (%)	후계자 없 음 (%)	무응답 (%)	계 호, (%)
	동거자녀 (%)	비동거자녀 (%)				
벼 농 사	9.6	11.2	60.3	18.2	0.7	561(100.0)
식량작물	8.1	6.5	54.8	29.0	1.6	62(100.0)
채 소	8.1	5.4	59.5	27.0	0.0	37(100.0)
과 수	15.1	12.8	47.7	24.4	0.0	86(100.0)
화 훼	20.0	40.0	20.0	20.0	0.0	5(100.0)
축 산	16.3	4.1	59.2	20.4	0.0	49(100.0)
특 작	15.3	11.9	57.6	10.2	5.1	59(100.0)
기 타	0.0	0.0	60.0	40.0	0.0	10(100.0)
전 업 농	10.6	12.2	56.8	19.7	0.7	716(100.0)
겸 업 농	11.1	2.6	64.1	20.3	2.0	153(100.0)
계	93 (10.7)	91 (10.5)	505 (58.1)	172 (19.8)	8 (0.9)	869(100.0)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현지통신원 조사결과(1995. 8)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할 때 비로소 가능하다. 농가자산과 후계자는 경영승계를 위한 필요충분조건이라 할 수 있다.

경영승계를 위한 후계자의 확보 여부를 묻는 질문의 결과를 <표 4-13>에서 보면, 후계자의 확보 비율은 20%를 상회하는 데 그치고 있어 경영승계를 위한 후계자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주요 작목별로 보면 벼농사, 식량작물, 채소부문의 후계자 확보율은 상대적으로 낮고 과수, 화훼, 축산, 특작부문의 후계자 확보율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이 작목별로 후계자 확보율이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은 후계자의 확보율과 작목별 소득률의 상관 관계에 기인하고 있다고 보인다. 즉, 벼농사, 식량작물, 채소부문의 소득률은 과수, 화훼, 축산, 특작부문의 소득률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고 따라서 벼농사, 식량작물, 채소부문에는 후계자가 잔

류할 경제적 동기가 크지 못하리라는 점이다.

후계자의 문제는 당연한 논리이지만 농촌의 교육, 의료, 문화 등의 생활 환경 조건과 더불어 무엇보다도 농가소득이 가장 큰 변수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농가소득이 도시가계소득과 비교하여 그것과 균형되거나 상회하는 쪽으로 개선된다면 농촌의 후계자 잔류는 더욱 늘어날 것이며, 현재와 같이 불리한 소득조건하에서는 영농후계자 문제는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벼농사, 식량작물, 채소부문이 노동집약적 농업부문인데 반해 과수, 화훼, 축산, 특작부문은 전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본집약적 농업부문이라는 점도 후계자 확보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인다. 상대적으로 전자는 노동강도에 비해 소득률이 낮아 젊은이들이 힘든 노동을 기피하는 경향에 비추어 후계자가 잔류할 소지가 후자에 비해 적을 것이기 때문이다.

전·겸업농의 비교에 있어서는 전업농이 겸업농보다 후계자 확보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전업농의 후계자 확보율은 전국 평균치를 상회할 뿐 아니라 겸업농에 비해서 후계자 대책이 적극적임을 알 수 있다.

이렇게 후계자 확보에 있어서 전업농이 적극적이라는 사실은 전업농의 육성이 후계자 확보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정부의 정책 지원에서도 이러한 사실이 충분히 고려되어 영농후계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4.2. 영농후계자에 대한 경영승계의 방법

<표 4-14>는 조사농가 중 영농후계자가 있는 농가에 대해서 경영승계를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응답을 집계한 것이다. 후계자있는 농가는 후계자에 대해서 생전에 명의이전을 해서 독립시키겠다는 응답이 52%, 유언에 의해 상속하겠다는 응답이 21%, 상속하는 것은 틀림없으나 상속 방법을 정하지 않았다는 의견이 27%로 나타났다.

4.3. 영농후계자의 경영승계에 대한 전망

또한 영농후계자가 확보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경영주의 사망에 따라 전체 농업자산이 단독상속되는 것은 아니며, 후계자가 확보될 경우에 있어서도 분할상속되는 사례도 있을 수 있다.

<표 4-15>는 후계자가 확보된 경우 단독승계되는 비율을 보여 준다. 즉, 전국적으로 후계자를 확보하고 있는 비율은 20%를 상회하고 있으나, 그 가운데서 후계자의 단독상속이 이루어지는 비율은 16% 정도이며, 나머지 4%, 즉 영농후계자 확보농가의 25% 정도는 분할상속되고 있다.

지역별로는 역시 제주도가 분할상속되는 비율이 높으며, 이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제주도가 본래 분할상속 관행이 널리 행해지고 있는 점에서 비롯된 결과이다.

영농후계자의 경영승계의 전망을 주작목별로 보면, 특히 벼농사와 식량

표 4-14 후계자에 대한 경영승계의 방법

구 분	생전명의 이전(%)	유언상속 (%)	상속방법 미정(%)	합 계 호, (%)
경 기	50.0	12.5	37.5	18 (100.0)
강 원	66.6	8.3	25.1	13 (100.0)
충 북	64.2	14.2	21.4	14 (100.0)
충 남	53.3	23.3	23.3	30 (100.0)
전 북	35.2	41.1	23.4	19 (100.0)
전 남	58.6	17.2	24.1	28 (100.0)
경 북	38.8	22.2	38.8	38 (100.0)
경 남	50.0	23.0	26.9	28 (100.0)
제 주	100.0	0.0	0.0	4 (100.0)
합 계	95 (51.6)	38 (20.6)	51 (27.8)	184 (100.0)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현지통신원 조사결과(1995. 8)

작물에서 분할상속되는 비율이 높고 채소의 경우 임대 또는 매각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평야지에서는 농지를 매각할 것이라는 의향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평야지의 농지매각 현상은 후계자의 부족이 그 원인임은 물론이고 쌀생산의 주요 기지인 평야지의 농지매각의 증대는 향후 우리 농업의 경영규모

표 4-15 후계자에 의한 경영승계의 전망

구 분	후계자 단 독 (%)	자녀분할 (%)	매각 (%)	임대 (%)	기타 (%)	무응답 (%)	계 호,(%)
경 기	19.5	33.3	9.2	32.2	3.5	2.3	87(100.0)
강 원	16.7	18.5	7.4	50.0	1.9	5.6	54(100.0)
충 북	24.5	20.8	13.2	37.7	2.0	1.9	53(100.0)
충 남	17.1	36.8	10.3	30.8	2.6	2.6	117(100.0)
전 북	13.5	31.5	16.9	32.6	4.5	1.1	89(100.0)
전 남	15.1	34.0	8.9	35.9	5.0	1.3	159(100.0)
경 북	12.0	37.3	12.0	32.7	4.7	1.3	150(100.0)
경 남	16.8	34.3	7.7	33.6	4.9	2.8	143(100.0)
계	17.7	53.0	11.8	17.6	0.0	0.0	17(100.0)
벼 농 사	15.3	35.7	8.9	35.3	3.0	1.8	561(100.0)
식량작물	8.1	41.9	14.5	29.0	3.2	3.2	62(100.0)
채 소	13.5	27.0	10.8	46.0	2.7	0.0	37(100.0)
과 수	19.8	30.2	11.6	31.4	5.8	1.2	86(100.0)
화 훼	60.0	20.0	20.0	0.0	0.0	0.0	5(100.0)
축 산	22.5	24.5	8.2	32.7	10.2	2.0	49(100.0)
특 작	17.0	20.3	18.6	30.5	6.8	6.8	59(100.0)
기 타	30.0	20.0	20.0	30.0	0.0	0.0	10(100.0)
도시근교	15.9	34.5	15.0	26.6	3.5	4.4	113(100.0)
평 야 지	14.7	34.9	8.7	38.6	2.0	1.1	355(100.0)
중산간지	13.3	34.8	14.6	31.0	4.4	1.9	158(100.0)
산 간 지	20.2	29.2	8.2	33.3	6.6	2.5	243(100.0)
계	140 (16.1)	289 (33.3)	92 (10.5)	297 (34.2)	34 (3.9)	18 (2.1)	869 (100.0)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현지통신원 조사결과(1995. 8)

확대와 관련하여 농업구조정책의 방향 설정에 큰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고 하겠다.

4.4. 경영승계와 농지유동화의 전망

농가 상속을 포함하는 경영승계가 앞으로 어느 시기에 어떤 부문에서 주로 이루어질 것인가를 농가의 잔여 영농기간을 근거로 정리한 것이 <표 4-16>이다.

이 결과를 보면, 농가 전체의 70% 이상이 향후 10년내에 은퇴하는 것

표 4-16 주작목별 향후의 잔여 영농기간

주작목별	5년정도	10년정도	15년정도	20년정도	20년이상	무응답	계
벼 농 사	37.4	39.2	11.4	4.1	5.3	2.5	561(100.0)
식 량 작 물	25.8	50.0	19.3	0.0	1.6	3.2	(100.0)
채 소	24.3	45.9	8.1	13.5	8.1	0.0	(100.0)
과 수	32.5	41.8	12.7	3.4	8.1	1.1	(100.0)
화 채	0.0	60.0	20.0	0.0	20.0	0.0	(100.0)
축 산	24.4	40.8	14.2	8.1	10.2	2.0	(100.0)
특 작	27.1	50.8	11.8	5.0	5.0	0.0	(100.0)
기 타	30.0	20.0	30.0	0.0	10.0	10.0	(100.0)
1ha미만	45.9	34.2	9.0	3.6	5.4	1.8	(100.0)
1-2ha미만	32.1	43.5	13.0	4.2	4.7	2.3	(100.0)
2-3ha미만	29.3	43.1	14.3	2.9	8.3	1.8	(100.0)
3-4ha미만	13.2	50.9	16.9	9.4	9.4	0.0	(100.0)
4-5ha미만	25.8	51.6	16.1	3.2	0.0	3.2	(100.0)
5ha미만	36.8	21.0	5.2	15.7	10.5	10.5	(100.0)
도시근교	35.4	40.7	9.7	7.0	6.1	0.8	(100.0)
평 야 지	33.8	41.6	14.0	3.9	4.5	1.9	(100.0)
중 산 간 지	29.1	43.0	12.6	4.4	7.5	3.2	(100.0)
산 간 지	36.2	39.9	11.1	3.7	6.5	1.4	(100.0)
계	294	359	108	38	51	19	869(100.0)
	33.8	41.3	12.4	4.3	5.8	2.1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현지통신원 조사결과(1995. 8)

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그 가운데 전체의 3분의 1인 34% 정도의 농가가 향후 5년 이내에 경영에서 은퇴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작목별로 보면, 수도작에서 5년 이내 은퇴 비율이 가장 높다. 이는 우리의 쌀 자급률의 저하 문제와 관련하여 수도작의 식부면적의 부족 문제 뿐만 아니라 영농주체의 고갈이라는 측면에서 심각하게 고려되어야 할 문제로 보인다.

그리고 경지규모별로는 1ha 미만의 영세농가가 5년 이내 은퇴율이 가장 높으며, 5ha 이상 층의 잔존 영농기간이 가장 많이 남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고령세대가 1ha 미만의 영세규모의 경지를 경작하는 비율이 높고, 5ha 이상의 대규모 계층은 상대적으로 젊은 세대로 구성되고 있음을 반영한 결과이다. 고령층이 영세소농이라는 우리 농업의 전통적 형태를 답습한 결과라면 상대적으로 젊은 세대들은 적극적인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는 기업적 경영마인드로 영농하는 세대로 볼 수 있다.

잔존 영농기간으로 추산되는 경영승계 구조의 특징을 요약하면, 현재의 농업인구의 한 세대가 향후 10년 이내에 소멸하고 새로운 세대로 재구축될 것을 예고한다는 점이다. 그리고 향후 10년 이내에 농가 상속이 경영승계의 형태로든 자녀 균분상속의 형태로든 어떤 형태로든 진행될 것이며, 자녀 균분상속에서 파생하는 농지의 임대차 및 농지의 매각 등도 이 시기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질 것을 나타내고 있다.

정상적인 경우로 본다면 농가의 잔여 영농연수가 단위연수에서 일정하게 나타나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향후 10년에 집중적인 은퇴를 기록하게 되는 것은 농촌에 후계자에 의한 새로운 영농세대가 형성되지 못한 데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즉, 그동안 산업화와 도시화, 도농간 소득 불균형 등 다양한 이유에 의해 농촌인구와 노동력이 도시·공업 부문으로 유출되었다. 그리고 그에 따른 인구와 노동력의 새로운 보충은 단절되어 농촌세대의 연결성이 상실되었던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따라서 위 표의 잔여 영농기간은 세대의 연결성을 상실하고 현존하는 고령화된 농촌세대의 소멸관계만 나타내고 있으며, 이

것이 은퇴시기 분포의 왜곡을 초래하게 된 이유라 할 수 있다.

이 같은 결과에 대한 정책적 함의는 우리의 농업구조정책이 향후 10년내에 영농후계 세대에 대한 육성 프로그램이 설정되고 시급히 실현되지 않으면 안된다는 점을 또 한번 확인시켜 준다고 하겠다.

그리고 현 세대의 은퇴에 따라 유동화대상 농지가 폭증할 것이고 이에 따라 농지매매 시장이나 임대차 시장의 혼란이 예상되고 이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규모화에 연결시켜 갈 것인가에 대한 정책대안이 현안으로 등장하고 있다. 농업의 생산주체로서의 농업후계세대의 재편성, 생산수단으로서의 농지소유, 임대차구조의 재편성이 구조정책의 핵으로서 실천 가능한 프로그램의 개발이 시급한 시점이다.

이러한 상황은 그 진행 속도의 빠름에 의해 위기로서 인식할 수도 있으나, 오히려 종합적인 농업구조개선을 목표로 할 때 그 여건은 좋아진 셈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다.

5. 농가 상속 및 경영승계에 관한 의식구조

5.1. 상속 및 경영승계의 방법에 대한 의식

향후 자녀들에 대한 상속과 경영승계를 보는 농민들의 의식구조에 대해서 먼저 농지의 승계 방법에 대한 농민들의 의식을 정리한 것이 <표 4-17>이다.

<표 4-17>에 의하면, 명의이전 및 상속에 의한 경영승계의 의향을 지대별로 보면 상대적으로 도시근교가 생전의 명의이전 방법을 선호하고 있으며, 유언상속의 비율은 도시근교가 높고 평야지는 상속방법 미정이라는 응답이 많았다. 그리고 이를 가족형태별로 보면 부모동거 3세대가 생전의 명의이전 의향이 높고 유언상속의 비율도 높은 편이었다. 또한 경영승계의 방법에 대해 대책 수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족 형태가 부부 단독세대

표 4-17 농지의 승계 방법에 대한 의향

구 분	생전이전 (%)	유언상속 (%)	방법미정 (%)	기 타 (%)	무응답 (%)	계 호, (%)
도 시 근 교	24.8	14.2	41.6	9.7	9.7	113(100.0)
평 야 지	17.2	11.3	56.9	3.7	11.0	355(100.0)
중 산 간 지	19.0	6.3	53.8	7.0	13.9	158(100.0)
산 간 지	20.0	12.8	51.4	7.8	7.8	243(100.0)
단 독 세 대	16.4	11.9	54.1	5.8	11.9	555(100.0)
부모동거2세대	21.5	8.2	53.7	7.3	9.4	233(100.0)
부모동거3세대	32.0	12.0	44.0	4.0	8.0	25(100.0)
기 타	33.9	16.1	41.1	7.1	1.8	56(100.0)
계	168 (19.3)	97 (11.2)	459 (52.9)	54 (6.2)	91 (10.5)	869 (100.0)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현지통신원 조사결과(1995. 8)

로서 생전의 명의이전, 유언상속에 의한 경영승계 비율이 상대적으로 가장 낮고 상속 방법을 결정하지 못한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여기서 생전의 명의이전은 비농민 자녀보다도 영농후계자가 있는 경우의 생전 명의이전이 많으며, 유언상속이나 상속방법 미정의 경우는 영농후계자가 없는 농가로 보인다.

자녀들에 대한 상속과 경영승계를 보는 농민들의 시각이 지대별로 가족 형태별로 승계 방법에 약간씩 비율을 달리하여 나타나고는 있지만, 요점은 현재의 농민들은 농가 및 농지에 대해서 상속에 대해서 구체적인 결론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점이다.

생전의 명의이전이나 유언에 의해 상속의 대상과 비율을 정해 놓지 않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며, 결과적으로는 사망 후 자녀들간의 합의에 따라 상속 대상과 비율을 정하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이는 농민들이 상속이나 증여에 대한 지식이나 인식의 부족이라기보다는 농지의 영세성과 후계 자녀의 부재가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농지규모가 영세함에 따라 농지의 자산가치가 크지 못하며, 이는 자녀들에게 있어서도 농지의 상속 배분에 대해 큰 관심을 끌지 못하는 이유가 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그리고 자녀들이 외지에 나가 있으며 노인부부만이 영농을 영위하는 경우가 많고 농지는 현재 경영주의 생계유지의 수단으로 인식하여 사망하는 날까지 농사를 지을 뿐 그 뒤의 문제는 상의한 적도 없고 모른다는 인식이 지배적이다.

5.2. 상속 형태에 대한 의식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상속의 방법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결론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상속의 형태에 대한 견해에 있어서는 뚜렷한 경향치를 보이고 있다. <표 4-18>에서 전국 평균에서의 상속 형태에 대한 농민들의 의향을 보면, 장자우선 분할상속을 가장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역별로 보면 충북, 전북지역에서 장자우선 분할상속 비율이 높고 제주도는 자녀균분 분할상속을 지지하는 비율이 많다. 그리고 경기, 강원지역에서 장자에게 단독상속한다는 견해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많다.

가족형태별 상속 형태에 대한 의식을 보면 부모동거 2세대와 부모동거 3세대에서 장자단독상속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으며, 경지규모별로는 5ha 이상의 대규모 농가에서 장자 단독상속 의향이 높다. 지대별 상속 형태에 대한 의향은 중산간지에서는 장자 단독상속, 도시근교에서는 자녀 균분상속, 평야지와 산간지에서는 장자우선 분할상속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지대별로 상속 형태에 대한 선호의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지대별 상속 형태와 관행을 그 원인과 현상별로 좀 더 구체적으로 파악하면, 중산간지에서는 농지가 균분상속규모에 이르지 못한다는 현실에서 장자에게 단독상속하는 관행을 보이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산간지와 평야지에서는 분할상속이라고는 하지만 장자가 많은 몫을 차지하는 장자우선분할 상속의향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평야지와 산간지의 경지규모가 차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평야지의 농지가 상속에 의해 소유권 분할될 면적이 산간지보다는 클 것으로 보인다.

도시근교의 분할상속은 농지가격이 상대적으로 높고 생산수단으로서의

표 4-18 농지 상속에 대한 의향

구 분	장 자 단독상속 (%)	자녀균분 분할상속 (%)	장자우선 분할상속 (%)	미 정 (%)	무응답 (%)	계 호,(%)
경 기	13.8	26.4	48.3	9.2	2.3	87(100.0)
강 원	13.0	33.3	35.2	16.7	1.9	54(100.0)
충 북	3.8	20.8	62.3	13.2	0.0	53(100.0)
충 남	6.0	23.9	47.9	21.4	0.9	117(100.0)
전 북	6.7	24.7	51.7	14.6	2.3	89(100.0)
전 남	8.2	26.4	48.4	15.1	1.9	159(100.0)
경 북	7.3	30.0	48.0	12.7	2.0	150(100.0)
경 남	9.8	28.7	49.0	9.8	2.8	143(100.0)
제 주	0.0	52.9	23.5	17.7	5.9	17(100.0)
단 독 세 대	7.6	27.8	48.8	13.9	2.0	555(100.0)
부모동거2세대	10.7	28.3	44.6	14.6	1.7	233(100.0)
부모동거3세대	12.0	28.0	48.0	8.0	4.0	25(100.0)
	3.6	21.4	57.1	16.1	1.8	56(100.0)
전 업 농	8.8	27.7	48.2	13.1	2.2	716(100.0)
결 업 농	5.9	26.8	48.4	18.3	0.7	153(100.0)
1ha 미만	7.7	24.3	46.4	19.4	2.3	222(100.0)
1-2ha 미만	8.8	28.1	47.8	13.5	1.9	377(100.0)
2-3ha 미만	6.6	29.9	47.9	13.2	2.4	167(100.0)
3-4ha 미만	7.6	24.5	58.5	7.6	1.9	53(100.0)
4-5ha 미만	9.7	35.5	51.6	3.2	0.0	31(100.0)
5ha 이상	21.1	26.3	47.4	5.3	0.0	19(100.0)
도 시 근 교	6.2	36.3	38.9	16.8	1.77	113(100.0)
평 야 지	7.3	23.7	54.4	12.7	1.97	355(100.0)
중 산 간 지	10.1	28.5	42.4	17.1	1.90	243(100.0)
산 간 지	9.5	28.4	47.3	12.8	2.06	(100.0)
계	72 (8.3)	239 (27.5)	419 (48.2)	122 (14.0)	17 (2.0)	869 (100.0)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현지통신원 조사결과(1995. 8)

농지보다도 재산가치로서의 농지에 대한 인식이 지배적임에 따라 거의 도시 토지의 상속 관행에 접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농가의 상속형태에 대한 의향은 향후 농업의 구조변화에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현재 농지의 규모화와 농지의 집적을 도모하여 경쟁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정부의 정책의지에 비추어 농지의 지나친 소유권 분할은 규모화에 부정적인 기능으로 작용한다.

현재 이미 소유의 유동화가 제한적이고 임대차에 의한 경영의 유동화가 일반적인 현실이기는 하지만, 농지소유의 세분화는 유동화를 경직시키는 결과로 작용할 것은 분명하다고 보인다.

특히 도시에 거주하는 자녀들에게 상속에 의해 소유권을 분할시키는 것은 부채지주의 양산을 초래하는 결과이며, 이는 중국적으로는 임대차에 의한 경영의 유동화에도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뿐 아니라 농지의 경작포기 현상 등을 증가시켜 간척, 개간등에 의한 농지의 개발효과를 상쇄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농지의 양적 잠식이 도시와 공업부문의 개발수요에 의해서도 초래되지만 부채지주들에 의한 성실경작의 포기, 농지의 방기 등에 따른 농지의 질적 잠식은 식량자급률 제고를 위한 경지의 확보와 쌀 생산 증가를 위한 논 면적 확보에도 역기능으로 작용할 소지가 강하다.

특히 산간지의 농지가 분할상속될 경우에는 영세소규모농지에 경작 조건이 나쁘다면 이는 한계지화하여 경작방지 농지로 전환될 확률이 높다. 그리고 도시근교지역의 분할상속에 의한 농지의 소유 세분화는 매각 경향을 증대시키고, 이를 농업부문에서 모두 흡수할 수 없을 경우에는 도시, 공업부문의 용지로서 용도전환될 가능성을 증폭시킬 것이다.

이렇게 소규모단위로 세분화된 농지의 일부가 도시, 공업용지로 용도전환되기 시작하면 “들”이라는 집적된 농지가 얼룩처럼 스프롤화되어 그 지역 전체가 규모화된 농지의 기능을 상실하고 비농업용 토지지역으로 용도전환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이렇게 상속 관행이 농업의 경쟁력 강화에 역기능으로 작용하는 면이 노출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제도적 및

표 4-19 비농민 상속자녀의 농지처분 관행

구분	형제나 친척이 사용대차 (%)	형제나 친척에게 매각, 임대 (%)	타인에게 매각, 임대 (%)	기타 (%)	무응답 (%)	계 호,(%)
경기	29.9	31.0	32.2	3.5	3.5	87 (100.0)
강원	38.9	24.1	31.5	3.7	1.9	54 (100.0)
충북	47.2	22.6	26.4	1.9	1.9	53 (100.0)
충남	48.7	27.4	21.4	1.7	0.9	117 (100.0)
전북	29.2	39.3	30.3	0.0	1.1	89 (100.0)
전남	35.9	34.0	26.4	1.9	1.9	159 (100.0)
경북	45.3	24.7	23.3	4.0	2.7	150 (100.0)
경남	39.9	36.3	18.9	3.5	1.4	143 (100.0)
제주	58.8	23.5	17.7	0.0	0.0	17 (100.0)
전업농	41.2	30.6	24.6	1.8	1.8	716 (100.0)
겸업농	34.0	30.7	27.5	5.9	2.0	153 (100.0)
계	347 (39.9)	266 (30.6)	218 (25.1)	22 (2.5)	16 (1.8)	869 (100.0)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현지통신원 조사결과(1995. 8)

정책적 보완이 시급한 과제이다.

<표 4-19>는 비농민 상속자녀의 농지운용 경향에 대해 조사한 결과로서 현재 도시에 나가 있거나 농업을 영위하지 않는 자녀가 상속을 받았을 경우 농지를 어떻게 활용하는가를 질문한 데 대한 응답을 집계한 것이다. 표를 보면 형제나 친척들에게 사용대차의 형식으로 빌려 주는 경향이 강하다는 응답이 가장 많다.

그 다음으로는 역시 친척과 형제에게 임대차 형식으로 빌려 주는 경향이 강하다는 응답이었으며, 타인에게 임대 또는 매각한다는 응답도 상당한 비율이었다. 여기서 사용대차와 임대차의 구별은 사용대차의 경우는 빌려서 경작할 경우에 있어서도 임차료가 없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의 거의 무상으로 경작하는 것을 말하며 임대차는 친척과 타인의 구별없이 일정수준의 임차료를 지불하고 땅을 빌려 쓰는 형태를 말한다.

표의 결과로서 볼 때 현재의 상속분할된 농지의 경작은 대체로 농촌에 남아 있는 형제나 친척들에게 빌려 주는 경향이 강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향후 농촌노동력의 부족과 노령화가 더욱 심화될 상황에는 이러한 농지를 경작할 주체가 누구인가에 대해서는 전망이 대단히 불투명한 실정이다.

이렇게 친척이나 형제들이 은퇴하게 될 경우를 대비해서 이러한 농지를 생산에 연결시키기 위해서는 현재보다 활성화된 농지임대차 시장이 형성되어 탈농농가와 부재지주들의 농지가 농촌에서 생산에 활용될 수 있도록 제반 제도적 장치가 강구될 필요가 있다.

제도적 장치의 한 가지 대안으로서 농촌임대차시장기능의 활성화에 보완 조치로서 정부가 임대차 시장에 적극 개입하여 농지의 집적과 규모화를 도모하고 임대차의 창구 기능을 담당하는 전담기구의 설치 등이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제 5 장

경영승계에 따른 농지유동화의 전망

1. 조사마을의 개황

제4장에서 분석한 전국 조사를 보완하고 특히 경영승계에 따른 농지 유동화를 전망하기 위하여 자연부락을 선정하여 전수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마을은 모두 순농촌의 성격을 가지는 마을로서, 도시근교 지대에서는 경기도 안성군 미양면 후평리, 중산간 지대에서는 충북 괴산군 청안면 조천4리, 평야지대에서는 전북 김제군 부량면 대평리 대장부락 등 3개 마을을 선정하였다. 조사 시기는 후평리에 대해서는 9월과 11월의 두 차례, 대평리와 조천2리에 대해서는 11월에 한 차례의 본조사를 실시하였다.

1.1. 도시근교 사례마을의 개황(경기도 안성군 미양면 후평리)

도시근교 지대의 사례마을로 선정된 경기도 안성군 미양면은 안성군의 대표적인 평야지역으로서 전래로부터 경지면적이 넓은 부촌으로 알려져 왔다. 후평리는 미양면의 소재지로서 가구수는 전체 68호이고, 수도작 농가가 대부분이며 축산 농가가 2호, 시설채소 농가가 9호이다.

표 5-1 안성군 후평리의 농가상속 개황

경영주 연령별	세대주의 가족내의 위치			소유경지의 상속여부			평균 경지면적 (ha)	합 계 (호)
	장남	차남	삼남 이하	단독 상속	분할 상속	신규 농가		
30-39	3	2	1	2	-	4	1.1	6
40-49	3	1	-	2	1	1	1.7	
50-59	9	3	2	2	3	9	1.2	14
60-69	9	3	2	4	2	8	1.0	14
70이상	2	1	-	1	-	2	0.7	3
합 계 (%)	26 (63.4)	10 (24.4)	5 (12.2)	11 (26.8)	6 (14.6)	24 (58.6)	1.1	41 (100.0)

후평리는 농가 호수가 계속 줄고 있지만 반면에 외지로부터의 유입되는 농가가 상당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호수가 안정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평야지대인 만큼 경지정리가 완료되었으며, 마을의 논은 현재 재경지정리 사업지구로 지정되어 3000-5000평 단위로 실시될 계획으로 있다.

조사농가는 전체 농가 68호 가운데 경지를 보유하고 있는 농가(임대차 농지 제외)인 41호를 대상으로 전수조사하였다. 경지 없는 농가는 주로 임대차에 의존하거나 인근의 안성읍에 직장을 가지고 농외소득에 의존하는 가구이다.

후평리의 농가상속에 관한 개황은 <표 5-1>에서 정리한 바와 같다. 이 마을에는 경영주가 선친대의 가족 관계에서 장남인 경우가 63.4%로서 장남 출신이 많다. 또한 소유경지의 상속 여부에 있어서는 단독상속 비율이 분할상속을 상회하고 있으나, 특징적인 현상은 선대로부터의 상속에 의한 경영승계 농가보다는 외지로부터 유입되거나 스스로 농지를 구입하여 신규로 농가를 창설한 비율이 높다는 점이다.

논의 평당 지가는 20, 000-25,000원 정도이며, 호당 평균 경지면적은 임대차를 제외하고 평균 1.1ha 정도이다. 경영주의 연령 분포를 볼 때, 50-60

세 층이 농업노동력의 근간을 형성하고 있으며, 50세 이상층이 전체 농가의 75%를 상회하여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다.

1.2. 평야지 사례마을의 개황(전라북도 김제군 부량면 대평리 대장부락)

평야지 사례마을인 전라북도 김제군 부량면 대평리 대장부락은 김제평야에 위치한 우리 나라 대표적 곡창지대의 전형적인 마을이다. 이 마을은 농가수의 감소가 심하여 1968년에 120여호의 농가가 있었다고 하는데, 현재는 주민등록상 63호이고, 실제로 마을에 거주하는 농가는 55호, 그 중에서 경지를 보유한 농가는 38호이다.

이 마을의 논은 일제시대에 1, 200평 단위로 경지정리되었으며, 비교적 대형농기계 중심으로 기계화가 잘 되어 있다. 논이 평당 지가는 12, 000원에서 15, 000원 사이로 형성되고 있다.

대평리의 농가상속에 관한 개황을 보면, 장남 비율이 53%로서 제4장에서 조사한 전국조사의 평균치인 62% 수준을 하회하고 있으며, 사례마을 중에서도 장남의 비율이 가장 낮다. 그리고 외지유입 인구가 많아 상속보다

표 5-2 부량면 대평리의 농가상속 개황

경영주 연령별	세대주의 가족내의 위치			소유경지의 상속여부			평균 경지 면적 (ha)	합 계
	장남	차남	삼남 이하	단독 상속	분할 상속	신규 농가		
30-39	1	-	-	1	-	-	4.8	1
40-49	4	2	-	1	3	2	2.8	6
50-59	4	4	7	3	5	7	1.8	15
60-69	8	3	-	7	2	2	1.9	11
70이상	3	2	-	2	1	2	1.8	5
합 계	20 (52.6)	11 (28.9)	7 (18.5)	14 (36.8)	11 (28.9)	13 (34.3)	2.6	38 (100.0)

도 신규로 농가를 창설한 비율이 높은 편이다.

마을의 평균 경지면적은 2.6ha로서 사례마을뿐만 아니라 전국 평균규모를 훨씬 초과하는 대규모 영농을 실현하고 있다. 이러한 영농의 대규모화는 <표 4-2>에 나타난 바와 같이 경영주의 연령이 젊어질수록 경지규모가 늘어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또한 수도작의 전업화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경지규모는 임대차를 포함하면 앞으로도 상당한 규모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경영주의 연령 분포에 있어서는 50대가 가장 많고, 다른 사례마을과 마찬가지로 50세 이상 농가수가 전체 농가의 75% 수준으로 역시 고령화가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1.3. 중산간지 사례마을의 개황(충청북도 괴산군 청안면 조천4리)

중산간지 사례마을인 충청북도 괴산군 청안면 조천4리는 전형적인 중산간지 마을로서 마을 전체의 총호수는 63호이며, 그 중에서 경지 없는 농가가 많아 조사농가는 25호에 불과하다. 또한 호당 경지면적이 작고 임대차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으며, 장씨 집성촌으로 종종 소유의 농지가 많다는 점이 특징이다.

호당 평균 경지면적은 작으나 마을에 대지주가 존재하여 대부분의 임대차는 이 지주의 농지를 임차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임차료는 수량의 3할 정도로 형성되고 있으며, 장씨 문중의 농지를 임차하는 농가도 많다.

논의 평당 지가는 최근에 농지매매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정확한 지가를 알 수 없으나, 이장의 말에 의하면 논은 경우 대략 평당 25,000원 정도로 매매할 의사가 있다고 할 정도로 비교적 지가 수준이 높은 편이다.

경작 조건은 수원지가 없는 관계로 거의 천수답이 많으며, 따라서 수리조건이 불리하여 휴경지가 늘고 있다는 점을 호소하는 정도이다.

조천4리의 농가상속 개황을 보면, 세대주가 장남인 경우가 72%로서 전국 평균치를 훨씬 상회할 뿐 아니라 사례마을 가운데서도 장남의 비율이 가장 높다. 따라서 상속 형태에 있어서도 단독상속 비율이 전국 평균치와

표 5-3 청안면 조천4리의 농가상속 개황

경영주 연령별	세대주의 가족내의 위치			소유경지의 상속여부			평균 경지 면적 (ha)	합 계
	장남	차남	삼남 이하	단독 상속	분할 상속	농가 창설		
30-39	-	-	1	-	1	-	1.1	1
40-49	3	1	1	3	1	1	0.9	5
50-59	9	1	-	7	2	1	1.1	10
60-69	4	3	-	1	-	6	0.7	7
70이상	2	-	-	1	-	1	5.1 1)	2
합 계	18 (72.0)	5 (20.0)	2 (8.0)	12 (48.0)	4 (16.0)	9 (36.0)	1.8	25 (100.0)

주: 조사마을은 지역 특성상 중산간지로서 평야지인 부량면 대평리나 도시근교인 미양면 후평리의 농가 보다 평균 경영면적이 적을 것으로 생각하기 쉬우나, 청안면 조천4리에는 10ha 정도를 보유하는 대지주가 있으며, 마을의 상당수 농가가 이 지주의 농지를 임차하고 있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사례마을 평균을 모두 상회하고 있으며, 세대주의 장자 경향은 이러한 단독상속 관행과 결합하여 장자 단독상속이 이 마을의 전통적인 상속 관행을 형성시킨 것으로 사료된다.

이러한 장자 단독상속의 이유를 마을 주민에게 질문한 결과, 근본적으로 영세한 경지규모로 인하여 분할상속할 만큼 경지규모가 크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호당 평균 경지면적이 중산간지임에도 비교적 많은 것은 마을에 장씨문중의 대지주가 자식들의 명까지 합하여 약 10ha 정도의 농지를 보유하고 있는데서 기인한 것이며, 마을의 많은 농가가 이 대지주의 농지를 임차의 형식으로 농사를 짓고 있는 형편이다.

경영주의 연령 분포는 50세 계층이 가장 많고, 50세 이상층의 비율은 80%에 육박하여 수치상으로는 사례마을 중 가장 고령화의 정도가 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 보유농지의 취득경로 분석

여기서는 사례마을의 전체 보유농지가 어떤 경로로 취득되었는지에 대하여 검토하기로 한다.

이 조사에서 보유경지에는 임차농지가 제외되며, 경영주의 소유지와 친인척의 농지를 사용대차하고 있는 농지를 포함한다. 사용대차는 거의 소유농지와 같은 정도로 경작되고 있으며, 또한 임차료의 수준이 매우 낮거나 무상으로서 임차기간면에서도 구애를 받지 않는 장기임차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이 조사에서의 보유면적은 경영주 명의의 경지면적과 친족 명의로 사용대차하는 면적, 그리고 친족이 아니나 장기에 걸쳐 사용대차하는 기타의 경지면적으로 구성된다.

또한 경영주 명의의 경지는 그 취득 경로로 보아 상속이나 증여에 의한 취득, 즉 경영승계로서 얻어진 농지와 매입한 면적의 합계를 의미한다. 또한 이 매입 면적을 친족에게서 매입한 면적과 타인에게서 매입한 면적으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상속과 증여는 엄밀한 의미에서 사후의 유산상속과 생전 증여로 나누어 조사하였다. 가족에게서 매입한 경우는 그 경지가 분할상속에서 비롯되는 공동명의 농지인지, 아니면 개인명의의 농지인지를 구분하여 파악하였다.

친족명의의 농지를 사용대차하는 경우에는 그 친족의 가족 관계를 나누어 조사하였다.

따라서 마을조사와 우편조사는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다. 즉, 우편조사에서 파악한 증여의 의미는 법률적 관계가 아니라 사실적 관계만을 가지고 증여로 간주한 데 반하여, 사례마을 조사에서의 증여 관계는 법률적으로 명의이전된 농지를 증여 농지로 파악하였다. 이러한 결과로 사례조사에서의 증여 비율은 앞 장의 설문조사 결과와는 달리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음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2.1. 도시근교인 마을 보유농지의 취득경로 분석(경기도 안성군 미양면 후평리)

도시근교인 경기도 안성군 미양면 후평리의 전체 농지는 57.3ha로 파악되었다. 그 취득 경로를 분석해 보면, 총면적에서 차지하는 경영주 명의의 비율(92%)에서 상속 및 증여에 의한 취득면적(45%)과 매입을 통한 취득면적의 비율(47%)이 비슷한 정도를 보이고 있다.

이는 이 마을이 상속에서 계승된 농가와 함께 다른 곳에서 이주한 농가가 많으며, 현지 마을 출신이라 하더라도 상속에 의한 승계가 아닌 농지구입으로 농가를 창설한 신규 농가가 많기 때문이다. 또한 친족명의 농지를 대리경작하는 농가가 상당수 존재하는 것도 원인으로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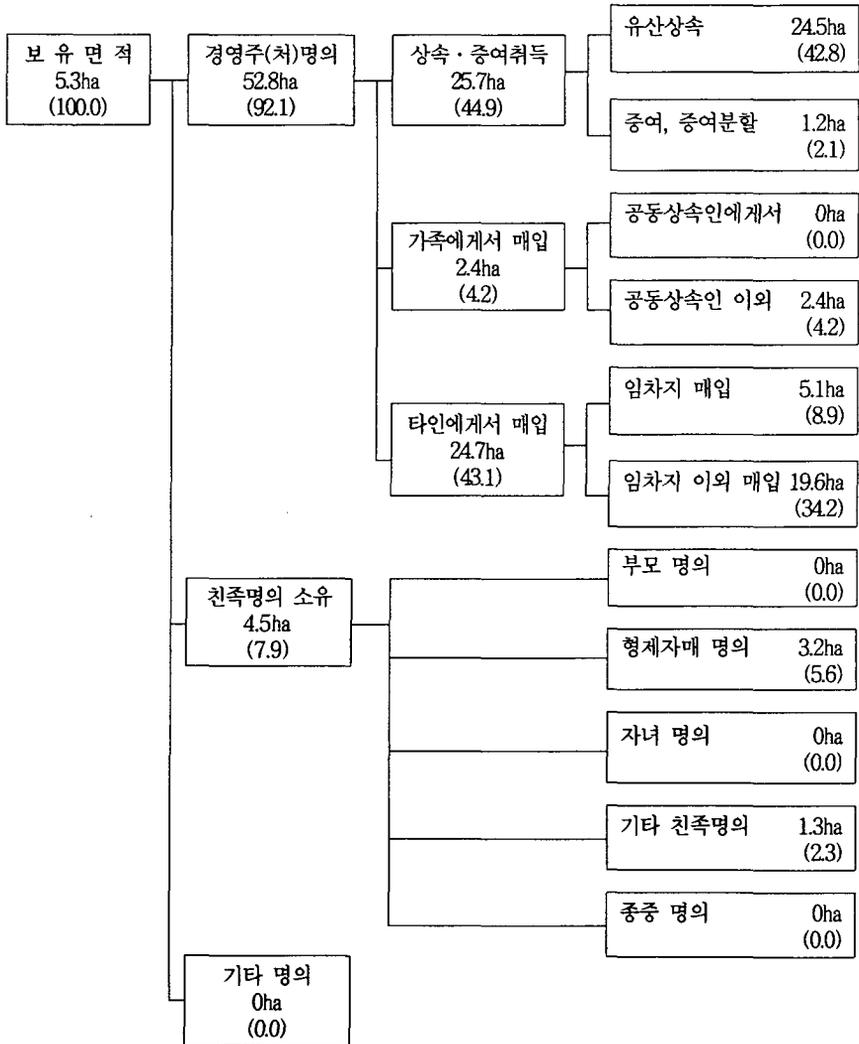
그림 5-1에서는 면적 비율로 표시되어 친족 명의의 대리경작 농가호수가 나타나지 않으나, 전체적으로 경지 있는 농가의 27%에 달하는 15호의 농가가 형제·자매·친인척의 농지를 소규모나마 대리경작하는 사례(8%)가 발견되고 있다. 그리고 친족 명의의 농지 가운데서도 도시에 나가 있는 형제자매 명의의 농지비율(6%)이 높다.

이는 이 마을의 농지가격이 상대적으로 높고 분할상속된 부재지주가 이를 처분하기보다는 잔류하는 형제나 친인척에게 임차료 수입보다는 단지 농지의 관리만을 위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경영주 명의로 매입할 경우에 있어서도 후평리는 다른 사례마을보다 친족에게서 매입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상속(43%)과 증여(2%)의 비율은 상속이 압도적으로 많은데, 가족 매입의 경우에는 공동상속인 명의의 농지 취득이 없고, 또한 농지의 상속이 공동명의로 상속되는 경우가 없었다.

후평리의 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분할상속된 농지가 농촌에 잔류하는 친인척에 의해 대리경작되는 사례는 점차 증가하는 경향에 있다. 이는 단지 농지의 관리를 위한 농지의 관리위탁의 성격을 띠고 있다.

그림 5-1 미양면 후평리의 보유농지(논·밭·과수원의 합계) 취득경로



그러나 이러한 대리경작이나 관리위탁 역시 현재의 농가 고령화와 후계자의 단절이 심화되고 있는 추세를 감안할 때, 언젠가는 임대차나 매각의 대상이 되는 농지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된다.

2.2. 평야지 마을 보유농지의 취득경로 분석(전라북도 김제군 부량면 대평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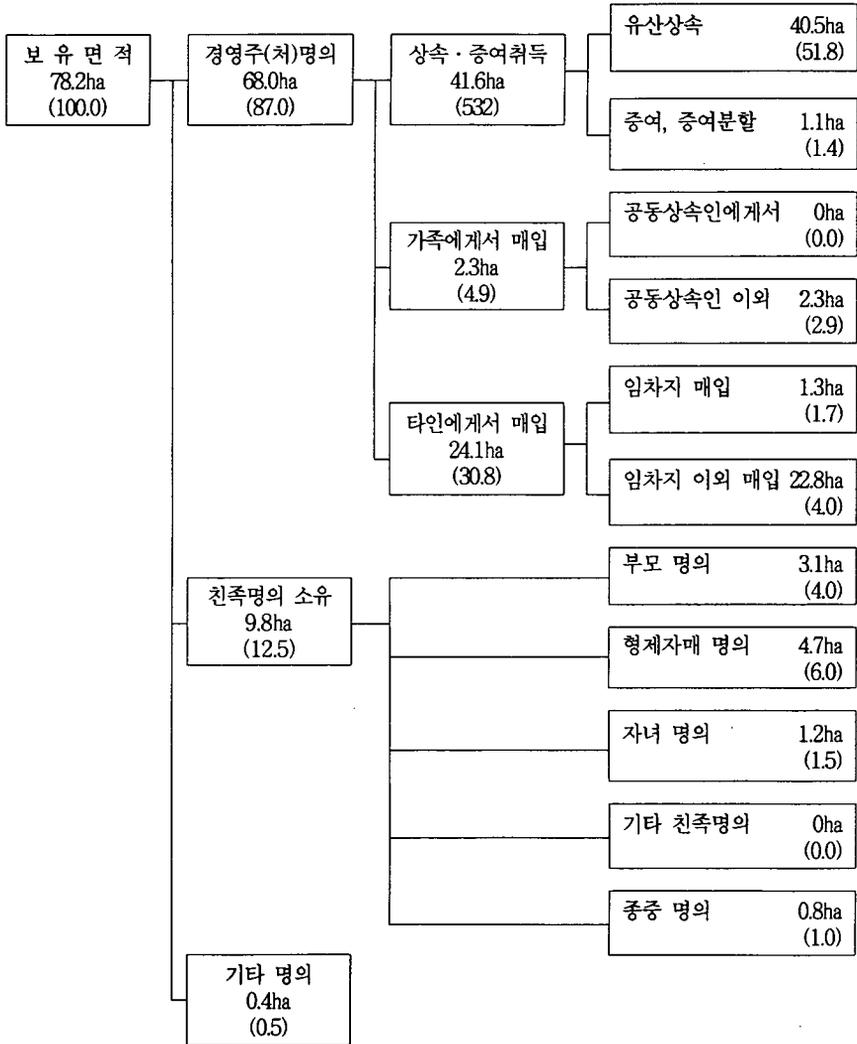
<그림 5-2>는 대평리의 보유농지에 대한 취득 내역을 경로로 분석집계한 것이다. 정리한 결과에 의하면, 마을의 보유면적 총계는 78ha로서, 그 중 경영주 명의가 68ha(87%), 친족명이가 10ha(13%), 기타 명이가 0.4ha로 나타나고 있다.

대평리의 경우에도 안성군 후평리와 마찬가지로 친족 명의의 대리경작면적이 상당히 있으나, 후평리의 경우에는 다수 농가가 소규모 경지를 대리경작하는 형태인 반면에, 대평리는 소수농가가 중규모 이상의 경지를 대리경작한다는 점에 차이가 있다. 즉, 대리경작의 호수는 후평리가 많으나 면적은 대평리가 많다는 의미이며, 이는 본래 대평리의 호당 평균 경지면적이 큼에 따라 대리경작의 면적도 크게 되는 결과로 해석된다.

또한 친족명이의 농지를 대리경작하는 사례가 부모 명의 3ha, 형제자매 명의 4.7ha, 자녀 명의 1.2ha, 종중 명의 0.8ha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그 가운데서도 형제자매의 농지를 대리경작하는 비율(6%)도 높았지만 부모 명의의 농지를 경작하는 경우(4%)도 나타나고 있다.

여기서 기타 명의의 농지라는 것은 친족이 아닌 타인의 농지를 관리하는 형식으로 장기임차하고 있는 사례이다. 그리고 경영주 명의의 농지(87%) 구성은 증여(1%)보다는 상속(52%), 공동상속인(0%)보다는 단독명이의 농지매입(3%), 임차지(2%)보다는 임차지 외의 농지매입 비율(30%)이 각각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림 5-2 부량면 대평리의 보유농지(논·밭·과수원의 합계) 취득경로



2.3. 중산간지 마을 보유농지의 취득경로 분석(충청북도 괴산군 청안면 조천4리)

사례마을인 충청북도 괴산군 청안면 조천4리는 조사마을의 개황에서 본 것처럼 전형적인 중산간지 마을로서, 호당 경지규모가 영세하고 장자에 의한 단독상속 비율이 매우 높은 마을이다. 특히 마을은 장씨 집성촌의 마을로서 경지 없는 농가가 많고 고령화가 매우 심각한 상태이다.

따라서 농지의 취득 경로에서도 몇 가지 특징이 발견된다. 마을의 보유 농지에 대한 취득경로를 분석한 결과, <그림 5-3>에서 보면 경영주 명의가 총 보유면적의 71%, 친족명의 소유가 29%의 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경영주 명의에 있어서도 상속(27%)보다 매입한 비율(43%)이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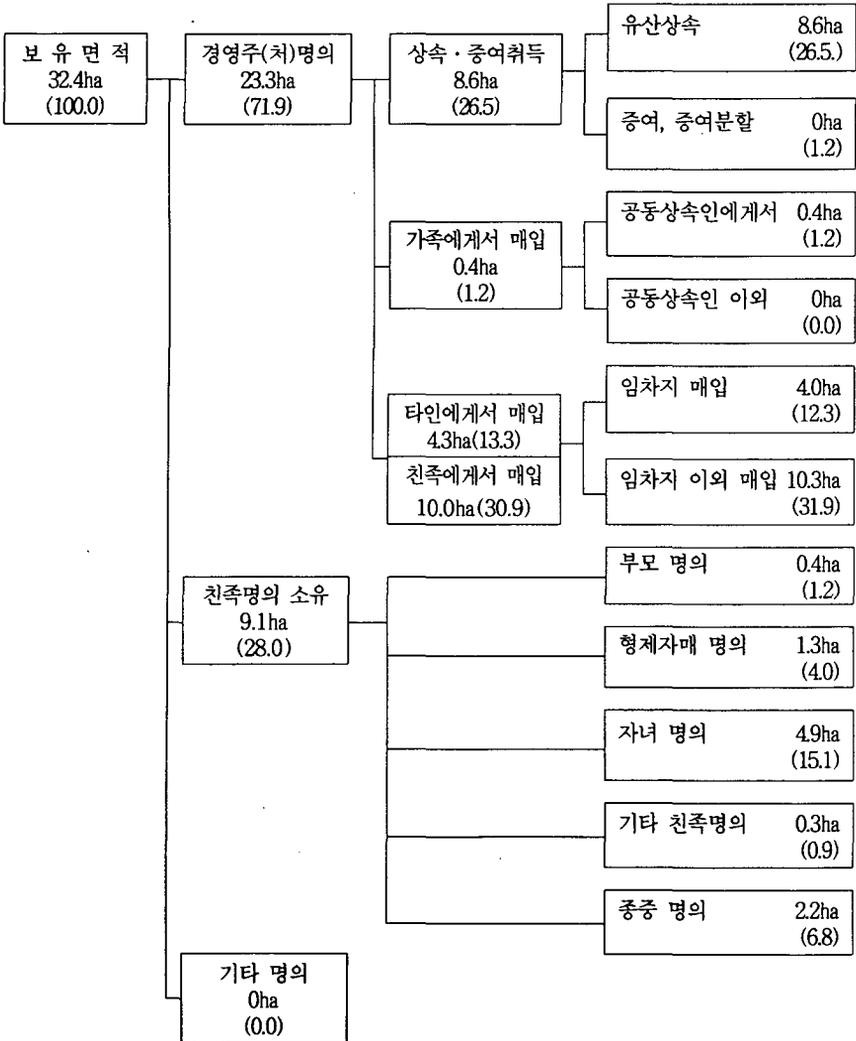
그리고 다른 사례마을과 마찬가지로 증여나 분할에 의한 농지 취득은 거의 없으며, 가족매입에 있어서도 공동명의로의 농지취득 사례가 나타나지 않는다.

특히 매입을 통한 경지 확보는 영세농지의 단독상속에 따라 복수의 자녀가 농촌에 잔류할 경우에 장남외에는 입차에 의존하거나 농지의 매입이 아니면 경지를 확보할 수가 없으며, 장남에 의한 상속분 역시 규모가 영세하여 매입을 통하여 확보하고자 경향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집성촌이 가지는 특성으로서 탈농이나 이농한 농가의 경지는 전부 친척이 대리경작을 하기 때문에 친인척 명의의 농지보유(9%)가 다른 사례마을보다 매우 높은 것이 특징이다.

또한 고령화의 심화 현상과 더불어 자녀들의 이농 경향이 강하여 자녀명의로 법적으로 증여하고 그 농지를 계속 경작하는 비율(16%)도 다른 사례마을보다 매우 높은 편이었다. 그리고 매입의 경우에 있어서도 자녀들에게 공동명의로 상속되어 있는 농지를 구입한 사례(1%)도 나타나고 있으며, 매입의 경우에 있어서도 타인 매입(14%)보다 일가(31%)에 의존하는 비율이 높다.

그림 5-3 청안면 조천4리의 보유농지(논·밭·과수원의 합계) 취득경로



3. 농지유동화의 전망

제4장의 전국 농가에 대한 우편설문조사에서도 일부 나타나고 있는 바와 같이 향후 10년을 경계로 해방후 1세대 경영주체 세력이 대거 은퇴하고 완전히 새로운 세대에 의한 경영주체로의 전환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농업경영승계의 단절성은 후계인력이라는 사람의 문제뿐만 아니라 임대차 또는 매각 등의 농지 문제를 동시에 파생시킨다.

이 절에서는 도시근교 마을과 평야지 마을, 중산간지 마을의 농지취득 경로, 상속관행, 경영승계의 과정을 전수조사를 통해 파악하고 이를 근거로 각 경영주의 잔여영농기간과 소유경지를 대비하여 잔여연도별 농지유동화의 정도를 전망하기로 한다.

3.1. 도시근교 마을의 농지유동화 전망

도시근교의 사례마을인 경기도 안성군 미양면 후평리의 전체 보유농지에 대하여 경영주의 잔여영농기간과 향후 농지의 처분의사를 비교하여 잔여영농연도별 농지유동화를 전망한 것이 그림 5-1이다.

그림 5-1의 결과에 의하면 후평리의 총농지 52ha 가운데 후계자에게 상속될 농지는 11ha로서 총경지의 21%이며, 비농민에 상속되어 농지 임대차나 매매가 불가피한 농지가 27ha, 총경지구모의 51%에 달하고 있다.

그리고 타인에게 매각될 농지는 15ha, 총경지의 28%에 이르고 있다. 이를 연도별로 구분하여 후평리 전체 농지의 유동화 전망을 보면, 향후 5년 이내에 25%의 농지가 자녀에게 균분상속되거나 타인에게 매각되고, 10년 이내에 누계 32.6%의 농지가 유동화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마을의 유동화 가능농지는 총 41.7ha, 총경지의 80%에 달하고 있다. 호평리의 경우는 농지의 유동화의 속도가 연도별로 비교적 고른 편에 해당하며, 이러한 경향은 다른 조사마을들과는 달리 임대차나 농지매매시장을

표 5-4 미양면 후평리의 농지유동화 전망

단위: ha, (%)

구 분	5년 이내 (2000년까지)	10년 이내 (2005년까지)	15년 이내 (2010년까지)	15년 이상 (2010년 이후)	합 계
영농후계자상속 (A)	- (0.0)	6.4 (12.1)	2.0 (3.8)	2.7 (5.1)	11.1 (21.0)
비농민 자녀상속 (B)	5.2 (9.8)	3.1 (5.9)	12.4 (23.5)	6.1 (11.6)	26.8 (50.8)
타 인 매 각 (C)	7.8 (14.8)	1.1 (2.1)	1.8 (3.4)	4.2 (8.0)	14.9 (28.2)
합 계 (A)+(B)+(C)	13.0 (24.6)	10.6 (20.1)	16.2 (30.7)	13.0 (24.6)	52.8 (100.0)
유동화대상농지 (B)+(C)	13.0 (24.6)	4.2 (8.0)	14.2 (26.9)	10.3 (19.5)	41.7 (79.0)

단숨에 압박하지 않기 때문에 농지문제를 대응하는 데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후평리의 경우 농지 문제가 낙관적으로 전망되는 원인은 이 마을 농가들의 경영주들의 연령 분포가 비교적 고르기 때문에 잔여영농기간의 분포도 고르게 나타나는 데 기인한다. 이와 같이 농지는 그 경영주체인 사람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3.2. 평야지 마을의 농지유동화 전망

전라북도 김제군 부량면 대평리의 경우는 총 소유경지에서 후계자에게 상속될 경지가 8.6ha로서 13%에 달한다. 그리고 비농민자녀에게 상속되어 임대차나 매매가능성이 있는 농지는 27ha로서 40%에 이르고 있다. 그리고 타인에게 매각될 것으로 보이는 농지는 32ha로서 47%이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볼 때 약 87%의 농지가 유동화 대상농지로서 사례마을 중 유동화될 농지 비율이 가장 높았다. 이는 특히 수도작의 생산기지인 평야지라는 점에서 매우 주목되는 결과로 보인다.

즉, 평야지에서의 농지유동화는 쌀의 자급률 제고라는 작금의 현안에서

표 5-5 부량면 대평리의 농지유동화 전망

단위: ha. (%)

구 분	5년 이내 (2000년까지)	10년 이내 (2005년까지)	15년 이내 (2010년까지)	15년 이후 (2010년 이후)	합 계
영농후계자상속 (A)	- (0.0)	2.4 (3.5)	3.4 (5.0)	2.8 (4.1)	8.6 (12.6)
비농민자녀상속 (B)	9.9 (14.6)	5.4 (7.9)	6.9 (10.1)	4.8 (7.1)	27.0 (39.7)
타 인 매 각 (C)	13.7 (20.1)	10.1 (14.9)	7.0 (10.3)	1.6 (2.4)	32.4 (47.7)
합 계 (A)+(B)+(C)	23.6 (34.7)	17.9 (26.3)	17.3 (25.4)	9.2 (13.5)	68.0 (100.0)
유동화대상농지 (B)+(C)	23.6 (34.7)	15.5 (22.8)	13.9 (20.4)	6.4 (9.5)	59.4 (87.4)

볼 때 적절한 유동화 대책의 성패가 곧 쌀의 생산성 제고의 성공여부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수도작의 생산기지로서의 평야지의 농지유동화 문제의 심각성은 경영주의 잔여연도별 집계, 즉 연도별 농지유동화 면적의 규모에 서보다 심각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대평리의 경우 향후 5년내에 유동화되는 농지는 23.6ha로서 전체의 약 35%에 해당하며 10년 내에 있어서는 누계로서 58%의 농지가 임대차되거나 매매를 기다리는 농지로 되고 있다.

이와 같이 급속히 급속한 임대차, 매매농지의 증가는 농지시장에서 공급 과잉을 초래하고 지금처럼 농업후계 인력이 고갈된 상황하에서는 농지시장에서의 임대차 및 매매가격이 왜곡되는 현상이 초래될 위험성이 있다. 즉, 농지시장에서 공급 부문에서는 다수의 농지 공급자가 존재하고 수요 부문에서는 소수의 수요자가 존재하는 이른바 수요과점시장(Demand Oligopoly Market)이 형성되어 농지 임대차 및 농지가격이 왜곡되는 가격 불균형현상

이 발생한다.

이런 현상은 지금도 상당히 진전되고 있다. 이의 극단적인 사례가 임차료를 받지 않고 농지의 관리만 위탁하는 경우이며, 이러한 현상이 심화되면 역으로 공급자가 임대료를 받는 대신 관리비를 별도로 임차인에게 지불하는 현상까지도 예상할 수 있다.

현재와 같이 후계인력이 고갈되고 세대교체에 따른 영농주체세력이 형성되지 않을 경우 농지시장에서 가격결정에 실패한 농지는 방기되거나 조방적 생산요소로 되어 생산성이 하락되는 상황이 우려된다.

3.3. 중산간지 마을의 농지유동화 전망

중산간지의 사례마을인 충청북도 괴산군 청안면 조천4리의 경우는 총 경지면적 23.3ha 가운데 영농후계자 상속분이 7.7ha로서 33%, 비농민자녀상속이 13.5ha로서 58%, 타인매각이 2.1ha로서 9%로 각각 나타났다.

조천4리의 특징은 영농후계자의 상속농지가 다른 사례마을에 비해 상대

표 5-6 청안면 조천4리의 농지유동화 전망

단위: ha, (%)

구 분	5년이내 (2000년까지)	10년이내 (2005년까지)	1년이내 (2010년까지)	15년이후 (2010년이후)	합 계
영농후계자상속 (A)	1.2 (5.2)	2.1 (9.0)	2.2 (9.4)	2.2 (9.4)	7.7 (33.0)
비농민자녀상속 (B)	4.0 (17.1)	4.3 (18.5)	3.8 (16.3)	1.4 (6.1)	13.5 (58.0)
타 인 매 각 (C)	- (0.0)	1.0 (4.3)	- (0.0)	1.1 (4.7)	2.1 (9.0)
합 계 (A)+(B)+(C)	5.2 (22.3)	7.4 (31.8)	6.0 (25.8)	4.7 (20.1)	23.3 (100.0)
유동화대상농지 (B)+(C)	4.0 (17.1)	5.3 (22.8)	3.8 (16.3)	2.5 (10.8)s	15.6 (67.0)

적으로 많다는 것이며, 이렇게 후계자에게 승계되는 경지가 많다는 것은 현재의 농지 문제에 비추어 매우 바람직한 현상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유동화의 대상이 되는 경지면적도 15.6ha, 총경지면적의 67%로서 사례마을 중 가장 적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물론 이런 수치는 어디까지나 상대적인 비교로서 비율만 가지고 판단할 문제는 아니다.

또한 10년 이내에 유동화될 경지면적의 비율이 40%라는 것은 중산간지의 후계인력 문제를 생각할 때 적은 비율로서도 평야지 이상의 문제를 초래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 그리고 조천4리의 연도별 유동화 농지의 배분율은 평야지 사례마을과 비교해서는 상대적으로 안정된 경향을 보이고 있다.

조천4리의 경우, 상속면적의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이 마을의 상속 관행인 장자 단독상속이라는 점과 관련되어 있다. 또한 비록 소규모의 농지라도 장자에게 단독으로 승계시키는 관행에 의해 거시적으로는 농지 문제를 완화하고 미시적으로는 경영승계를 통한 가족경영의 정착을 유도하게 된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이렇게 영농후계자에 의한 경영승계는 앞서도 약간 언급했던 것처럼 신규 농가의 창출에 필요한 제반 비용을 절감시켜 사회적 비용을 절약하는 동시에, 가족농의 강점을 살리면서 농업경영의 안정적인 발전을 도모하게 된다는 점에서 더욱 적극적인 정책의 배려가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제 6 장

요약 및 결론

1. 연구 결과 요약

최근 이·탈농이 급진전되면서 장래의 농업경영 주체의 확보라는 측면에서 후계자에 의한 농가의 상속 문제가 농정의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특히 농업을 둘러싼 여건 변화는 농가의 상속에 인식이나 관행을 급속하게 변모시키고 있는 것으로 사료되는 바, 이에 대한 동향과 실태를 파악하고 정책적인 시사를 얻고자 하였다.

위와 같은 문제의식하에서 이 연구는 먼저 농가의 상속과 경영승계에 관한 개념적인 틀을 정리하였으며, 이러한 개념 틀을 가지고 당원의 현지통신원에 대한 우편 조사와 사례마을의 현장 조사를 병행하여 상속관습 및 경영승계의 실태를 폭넓게 조사 분석하였다.

문헌조사는 관련통계 및 관련법률 등의 수집 정리, 선행연구에 의한 상속실태 조사결과 정리, 외국의 상속제도와 상속관행에 관한 자료정리 등을 수행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문헌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론적 틀을 정리하고 조사연구의 내용과 방법을 설정하였다.

상속과 경영승계에 관한 실태조사는 우편조사 및 현지조사로 나누어 수행하였다. 우편조사는 당연구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현지통신원 2, 200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작성하여 7월에 발송하고 8월 31일에 회수를 마감하였다. 그리고 회수된 조사표 중에서 부실 기재된 것을 제외하고 총 869개를 분석에 이용하였다.

전국 조사를 보완하고 특히 상속 관행에 의한 농지 유동화를 전망하기 위하여 자연부락을 선정하여 전수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마을은 모두 순농촌의 성격을 가지는 마을로서, 도시근교 지대에서는 경기도 안성군 미양면 후평리, 중산간 지대에서는 충북 괴산군 청안면 조천2리, 평야지대에서는 전북 김제군 부량면 대평리 대장부락 등 3개 마을을 선정하였다. 조사 시기는 후평리에 대해서는 9월과 11월의 두 차례, 대평리와 조천2리에 대해서는 11월에 한 차례의 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법학적 개념으로 상속이란 피상속인에게 속하는 경영자산 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최종적인 결제 수단으로 정의된다. 그러나 상속에 관한 일반적 관념은 법률적 정의보다 광의로 해석되는 경향이며, 관습적으로 생전증여는 물론 분가·출가에 따른 재산분할 등을 포함하여 피상속자의 재산적 지위가 자식에게 이전되는 것을 총칭하고 있다.

(2) 농가의 상속은 단지 재산 상속이 아닌 농업경영의 승계를 의미하며, 따라서 농가의 농업경영을 구성하는 영농자산(유형·무형자산)의 전부 또는 일부가 수익 및 소유의 관점에서 경영주로부터 후계자에게 원칙적으로 무상으로 승계되는 과정을 말한다.

(3) 농가 상속은 농업경영의 승계와 재산의 승계라는 두 가지 요소를 포함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후계자의 자립을 통하여 상속이 완결되는 것으로 파악되어야 한다. 따라서 농가 상속의 단계는 경영을 승계할 후계자 확보, 경영주의 은퇴와 경영 이양, 상속에 의한 소유권 이전의 완료의 세단계로 나눌 수 있다.

(4) 우리 나라의 재산상속 관습은 전통적으로 공동상속을 원칙으로 전개

되어 왔으며, 이러한 경향은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특히 농지 상속의 공동분할상속 관행이 농지의 세분화 내지 영세화를 조장하고 있다는 점은 선행연구에서도 널리 지적되고 있다.

(5) 현지통신원 조사의 농지상속 농가를 대상으로 상속시기별 상속 형태를 집계한 결과에 의하면, 농지개혁 이전에는 단독상속이 많았으나, 1960년대 이후에는 공동분할상속이 우위를 점하고 있다. 이렇게 분할상속이 증가한 원인으로는 대가족제도의 해체와 핵가족화의 진전, 농지의 家産 관념 약화와 재산적 가치에 대한 인식 증대 등이 지적되며, 특히 70년대 이후 농지 가격 상승으로 재산 분할의 성격이 강하게 표출된 것으로 판단된다.

(6) 통신원조사에 의한 농가상속의 수단을 보면 생전에 유언에 의해 자녀들에 대한 상속대상과 비율을 정하는 경우보다 유언없이 사망하여 가족간의 합의를 통해 상속대상과 비율을 정하는 합의상속이 농가상속의 주요한 수단이 되고 있다.

(7) 소유권 분할에 따른 농가상속의 형태를 단독상속과 분할상속으로 구분해 본다면 전국 평균에 있어서는 분할상속이 52%로서 단독상속의 비율 48%보다 높았으며, 특히 분할상속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는 지역은 제주도였다. 또한 가족구성 형태별로 보면 조부모, 부모, 자녀가 함께 동거하는 세대는 단독상속의 비율이 분할상속보다 2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우리의 상속관행이 장자우선 상속이라는 전통적인 가족문화에 기초한 결과로 보인다.

(8) 영농승계의 실태를 보면 대부분 조부로부터 경영승계가 이루어지고 있었고 당대에 신규로 창설된 농가는 매우 적은 비율을 보였다. 이와 같이 농업에서 전통적 가업승계 형식으로서 선대로부터의 경영승계가 주류를 이루는 것은 단지 우리 농업에서의 관행적 현상으로만 설명할 수는 없으며, 가족경영이 가지는 경영교육 기능이라는 강점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9) 경영승계자의 가족내의 위치는 장남에 의한 경영승계가 월등히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 여전히 농업의 경영승계는 장남에 의한 가업승계의

성격을 띠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경영주가 장남이라는 경향은 경영주의 연령별 분포와 비교해 보면 점차 약해지고 있으며 농업에서의 장남에 의한 가업승계의 비중은 향후 감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10) 경영승계의 과정은 선친생존시에 경영을 승계하는 경우로 나누어 조사한 결과 법률적 경영승계가 아닌 사실적 경영승계는 선친이 살아계시는 동안 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경영승계가 이루어진 후 상속의 형태에 있어서는 분할상속 비율이 단독상속 비율보다 높게 나타났다.

(11) 경영승계가 이루어지는 동기에 대해서는 노령에 의해 육체적으로 영농이 어렵게 되어 승계하는 경우가 많았다. 작목별로는 노령에 의한 경영승계는 주로 쌀 농사와 식량작물, 채소 등의 상대적으로 노동집약적이 작목부문이 높았고 화훼를 제외한 과수, 축산, 특작 등의 상대적으로 자본집약적인 부문은 노령에 의한 경영승계보다는 다른 이유의 비율이 높았다.

(12) 영농후계자의 확보 비율은 20%를 상회하는데 그치고 있어 경영승계를 위한 후계자 확보가 심각한 상황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주요 작목별로 보면 벼농사, 식량작물, 채소부문의 후계자확보율은 상대적으로 낮고 과수, 화훼, 축산, 특작부문의 후계자확보율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와 같이 작목별로 후계자 확보율에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은 후계자 확보율과 작목별 소득률과 상관관계에 기인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13) 영농후계자를 보유한 농가에 대해서 경영승계를 위한 방법은 후계자에 대해서 생전에 명의이전을 해서 독립시키겠다는 응답이 52%, 유언에 의해 상속하겠다는 응답이 21%, 상속하는 것은 틀림없으나 상속방법을 정하지 않았다가 27%로 각각 나타났다.

(14) 영농후계자가 확보된 농가의 비율은 20%를 상회하고 있으나 그 가운데서 후계자의 단독상속이 이루어지는 비율은 16% 정도이며 나머지 4%, 즉 후계자 확보농가의 25% 정도는 분할상속되는 경향이였다. 경영승계의 전망을 주작목별로 보면 특히 벼농사와 식량작물에서 분할상속되는 비율이 높고 채소의 경우 임대 또는 매각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또한 평야지에서는 농지를 매각할 것이라는 의향이 많이 나타났다.

(15) 농지유동화의 전망에 있어서는 농가 전체의 70% 이상이 향후 10년 내에 은퇴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가운데 전체의 3분의 1인 34% 정도의 농가가 향후 5년 이내로 은퇴할 것으로 전망되어 농지의 임대차, 농지의 매각 등도 이 시기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되었다. 따라서 농지매매시장이나 임대차시장의 혼란이 예상되고 이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규모화에 연결시켜 갈 것인가가 주요한 정책현안이 될 것이다.

(16) 도시근교, 평야지, 중산간지의 3개마을을 현지조사하여 농가상속과 경영승계와 관련된 농지유동화의 동향을 전망하였다. 도시근교인 경기도 안성군 미양면 후평리의 경우 전체 농지 57.3ha 가운데 경영주 명의의 비율(92%)에서 상속 및 증여에 의한 취득면적(45%)과 매입을 통한 취득면적의 비율(47%)이 비슷한 정도를 보였다. 후평리에서는 향후 5년 이내에 25%의 농지가 자녀에게 균분상속되거나 타인에게 매각되어 농지임대차시장이나 농지매매시장에 거래의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17) 평야지 마을인 전라북도 김제군 부량면 대평리는 전체 농지의 약 87%가 유동화될 것으로 나타났다. 대평리의 경우 향후 5년내에 유동화되는 농지는 23.6ha로서 전체의 약 35%에 해당하며 10년 내에 있어서는 누계로서 58%의 농지가 임대차되거나 매매를 기다리는 농지로 전망된다. 특히 이 지역은 농업후계 인력이 고갈된 상황에서 다수의 농지 공급자와 소수의 수요자가 존재하는 이른바 수요과점시장(demand oligopoly market)이 형성되어 농지 임대차 및 농지가격이 왜곡되는 현상이 발생할 것이 우려된다.

(18) 중산간지 사례마을인 충청북도 괴산군 청안면 조천4리는 호당 경지 규모가 영세하고 장자에 의한 단독상속 비율이 매우 높은 마을이다. 특히 마을은 장씨 집성촌의 마을로서 경지 없는 농가가 많고 고령화가 매우 심각한 상태였다. 그러나 비록 소규모의 농지라도 장자에게 단독으로 승계시키는 관행에 의해 거시적으로는 농지 문제를 완화하고 미시적으로는 경영승계를 통한 가족경영의 정착을 유도하게 된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2. 결론 및 정책 함의

우리 나라 농가의 상속 관습은 전통적으로 장자우대의 공동상속이 관행으로 유지되어 왔으나, 최근에 들어서는 분할상속 비율이 높기는 하지만 과거와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농지 상속에 있어서 농지개혁 이전까지는 상대적으로 단독상속이 강세를 보였으나, 1960년대 이후에는 공동상속이 계속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공동상속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핵가족화의 진전, 농지의 재산적 인식 등이 작용한 것으로 판단되며, 시대별로는 60대 중반까지의 생계유지적인 분가, 70년대 중반까지의 이농한 비농민 자녀의 재산 분할, 70년대 후반부터의 재산적 보유 등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과거의 농가 상속은 농업경영승계의 의미가 강하였기 때문에 공동상속의 경우에도 대부분 분가에 의한 농가 창출로 나타났으나, 최근에는 영농후계자 확보 여부가 상속 형태를 결정하는 요인으로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농하는 자녀에 대해서는 출가에 대한 보조 형태로 재산의 일부를 나누어주고, 영농후계자에게는 농지와 주택 등의 영농자산을 일괄승계하려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영농후계자를 확보한 농가에서는 유연한 경영승계와 후계자의 자립을 위하여 후계자 명의로 농지를 매입하거나 생전 증여에 의한 명의 이전, 일괄상속에 대한 약속 등을 행하는 등 경영주가 적극적으로 경영 이양을 하려는 노력이 다양하게 모색되고 있다.

한편, 영농후계자를 확보하지 못한 고령농가는 대부분 자식들에게 재산을 상속시키기보다는 노후까지 보유농지를 임대 또는 위탁하다가 매각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여기에는 이농한 자녀들이 도시에서 어느 정도 자립한 이유도 있지만, 보유농지를 노후 생활에 활용하려는 의식이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연구 결과에 비추어 몇 가지 정책적인 시사점을 찾을 수 있다. 특히 농지에 대한 비농민 자녀의 분할상속 관행과 고령농가의 보유 또는 매각 경향을 감안하여 다음과 같은 정책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첫째로, 영농후계자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특히 전업농과 영농후계자 육성정책은 상호보완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후계자를 확보한 전업농가에 대해서는 경영주와 후계자를 연계시켜 전업농으로 선정하여 정책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로 영농후계자의 유연한 경영승계를 도모할 수 있는 정책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한다. 후계자가 본격적으로 경영에 참여하기 이전에 선도농가 등으로부터 기술연수를 받기 위하여 교육훈련 비용을 보조하고, 경영에 참여해서는 유연하게 경영의 승계와 자립이 실현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경영 및 소유를 이전하는 가족협정제도 등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셋째로, 농지의 일괄상속을 위한 제도적인 장치가 보완되어야 한다. 현재 농지에 대한 상속세는 영농후계자의 상속분에 대하여 특례규정(기초공제 1억원, 추가공제 1억원)을 적용하고 있으나, 영농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재산가액이 크게 증가하는 추세이다. 따라서 후계자가 영농자산을 일괄상속하는 경우에 한하여 추가공제를 확대하거나 상속세 납세유예제도 등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넷째로, 노후대책으로 보유하고 있는 고령농가의 농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현재 후계자가 없는 고령농가의 보유농지는 대부분 임대나 위탁의 형태로 경작되고 있으나, 지역에 따라서는 임차인도 나서지 않아 불성실 경작 내지는 휴경화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앞으로 농촌의 고령화가 진전되면서 이러한 경향은 더욱 확산될 것이 예견되는 바, 사회보장적인 측면에서 공기관이 경작을 대행하거나 또는 국가가 매수하여 저액의 사용료로 장기임대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부 록 1

외국의 농가 상속제도

1. 독 일

독일은 전통적으로 농지의 분할상속주의를 취해 왔으며 중세에 이르러서는 단독상속으로 변화하였다가 프랑스혁명 이후 점차 공동상속제로 바뀌었다.

공동상속제의 결과, 농지의 극단적인 세분화가 초래되었으며 생산성이 저하됨에 따라 공동균분상속제에 대한 강력한 저항을 불러 일으키게 되었고, 이와 같은 농지불분할 요구와 전통적인 균분상속제의 충돌에 대한 타협으로 나타난 것이 일자상속법(Anerbenrecht)이다. 이 법은 1874년의 「하노바 농장법」이 모태를 이루고 있다.

1961년에 연방 법으로 제정된 농지거래법은 이와 같은 농지의 상속을 반드시 일자상속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상속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농장의 포괄적인 승계를 지향하고 있다.

특히 농지거래법은 농림업용지에 대한 법률 행위로 인하여 농지의 양도가 이루어지는 경우 관할 행정청의 인가를 받도록 하여 농지의 분할이나 영세화를 방지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행정청은 ① 양도가 토지의 부적절한 배분을 빚어낼 때, ② 양도에 의하여 해당 토지 또는 그것과 물리적으로 경제적으로 인접한 토지가 비경제적으로 소규모화되거나 분할될 때, ③ 양도의 가치가 그 토지의 가치로 보아 현저히 균형을 잃게 되는 경우 등에 있어서 토지거래를 인가하지 않거나 조건을 붙힐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농장의 과도한 분할이나 영세화를 방지하고 있다.

또한 이 법은 농지의 유산분할에 있어서 법원의 지정절차를 인정하여 농지의 세분화를 방지하고 있다.

2. 스위스

스위스는 1912년 통일민법전이 제정된 이래로 근대상속법의 기본원칙인 유언의 자유와 공동균분상속제를 기본원칙으로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나라와는 달리 가족공동체라는 장을 두어 가족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것이 특색이다.

농지상속에 관하여도 근대적 일자상속제의 취지를 살리기 위한 제반 조치를 민법전에 규정하고 있다.

스위스 민법의 농지상속에 관한 기본구조는 상속재산의 가치상의 분배로서는 균분상속이라는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유산분할에 있어서는 세분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재산을 포괄적으로 특정한 1인에게 귀속시키며, 다른 공동상속인과는 금전보상에 의하여 청산하려는 일자상속제를 채택하고 있다.

스위스의 이러한 일자상속제는 프랑스나 그밖의 여러 나라의 입법 동향에 많은 영향을 주었으며, 1965년의 연방법률과 1972년 10월의 연방법률에 의하여 부분적인 개정이 있었으나 기본적인 내용은 변함이 없다.

3. 프랑스

프랑스대혁명 후 제정된 나폴레옹 민법전은 자유와 인권사상 그리고 구 제도의 타파를 내세운 혁명사상을 기초로 하고 있다. 근대 민법의 효시인 이 민법전에 의하여 근대적인 상속법이 성립되었으며, 거의 모든 국가에 지대한 영향을 주었다.

그러나 민법전 제정 이후 고수해 온 균분상속제는 농지의 세분화를 가져왔으며, 이로 인한 농업구조의 불균형은 균분상속제에 새로운 주의를 불러일으키고 민법도 농지상속에 대한 특별한 예외를 설정하기에 이르고 있다.

프랑스의 농지상속은 가치분배라는 점에 있어서는 균분상속의 명분을 내세우고 있으나, 구체적인 재산의 귀속이라는 점에 있어서는 농지의 분할보다는 경영의 일체성의 유지에 노력하고 있다.

즉, 농지 등의 공유계속이라는 조항에 의해 누구든지 공유의 계속을 강요당하지 아니하며, 언제나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그 농지가 하나의 경제 단위를 이루며 피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에 의하여 경영되어 온 농업적 수익자산이 상속재산에 포함되고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공유계속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공동상속인 중의 1인이 공유계속에 대한 청구가 있는 경우에 법원은 그 농업자산의 공유가 계속된다는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프랑스 농지상속제를보다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보면 다음의 세 가지로 그 특징을 요약할 수 있다.

첫째는 청구에 대한 농지 등의 우선상속제도이다. 이는 농업경영에 참여해온 자가 농업경영자산을 다른 자에 우선하여 배당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이다.

둘째는 농지 등의 법정 우선상속제도이다. 이는 농지의 면적 및 가격이 일정규모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법원의 청구가 없더라도 상속인을 지정하여 법률상 당연히 우선상속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제도이다. 또한 이

때 공동상속인에 대한 보상금에 대해서도 일정기간 지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셋째는 건물만의 우선상속제도이다. 이는 위와 같은 방법에 의하여도 농지의 분할이 있게 될 경우에 건물만의 상속에 의해 경영의 일체성을 이루기 위한 제도이다.

또한 농지분할을 방지하기 위한 민법 이외의 제도로는 1937년7월의 통령법에 의한 임금연금 제도가 있다. 이 제도는 피상속인의 생전에 무보수로 농업에 종사해온 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에 그 친자간에는 임금연금으로서의 노동계약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그 자식이 종사해 온 연수에 상응하여 일정한 금액으로 선취하게 하고 미지급금의 명목으로 우선 상속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제도이다. 따라서 후계자의 경영승계에 대한 일종의 우대조치에 해당한다.

4. 영 국

근대 영국의 상속제도는 개인의 의사를 최대한 관용하는 유언의 자유를 인정하는 반면에 물적 재산권인 토지의 무유언 상속에 있어서는 최근까지도 장자상속을 인정하였다.

토지의 장자상속이 폐지된 것은 1876년 이후 수차례 걸친 개정 끝에 제정된 1925년의 재산법에 의해서이다.

그러나 관행적으로 남아 있는 장자상속과 유언의 자유에 의해 농지의 세분화는 그다지 진전되지 않고 있다.

5. 일 본

일본의 농지상속제는 전통적으로 장자상속을 원칙으로 하였으나 막부시

대에 들어와서는 관행적으로 장자단독 상속을 취하였다. 봉건상속제에서 단독상속의 형태를 견지한 것은 동양제국에서 일본만이 지닌 특유의 현상으로 파악된다.

장자단독 상속제는 명치유신에 의하여 변혁기를 맞게 되었으나, 장자단독상속이 완전히 폐지된 것은 1947년에 개정된 민법체계부터이다. 이 때부터 일본의 상속제는 개인적 균분적상속제로 확립되었다. 그러나 관습에 따라 제사상속은 그대로 인정하였다.

이에 따라 균분상속제에 의해 농지의 영세화·세분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졌으며, 1947년과 1949년 두 차례에 걸쳐 일본국회는 농업자산특별법을 제정하려는 움직임이 계속되었다. 그러나 농촌사회의 관행인 단독상속이 여전히 뿌리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민법체계에 의한 농지영세화는 크게 진전되지 않고 있다.

특히 1961년에 제정된 농업기본법은 제16조에서 “국가는 자립경영이 이루어지고 있는 자립경영 또는 이에 도달하려는 가족농업경영 등이 세분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유산상속에 있어서 종전의 농업경영을 가급적 공동상속인 1인이 인계하여 담당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한다”라고 규정하여 상속으로 인한 농지세분화방지의 법적인 제도장치를 마련해 놓고 있다.

또한 일본이 농업자산특별법의 시안이 마련되었으나 이를 시행하지 않고 있는 것은 민법상 규정된 균분상속의 원칙이 실제적으로 지켜지지 않고 있으며, 여전히 상속관행은 단독상속이 보편적으로 행해지고 있다는 보고에 따른 것이다.

일본에서 균분상속이 지켜지지 않는 주요 원인으로는 농지에 대한 家産 관념의 잔존, 무산노동의 잔존, 부모 부양의 불평등, 농업경영의 영세성 등이 지적되고 있다.

9. 선생님은 선친으로부터 어떤 형태로 재산을 상속받게 되었습니까?

- () ① 선친의 유언에 의하였다.
 () ② 유언없이 가족간에 합의하였다.
 () ③ 법에 정해진 대로 분할하였다.
 () ④ 기타()

10. 선친의 유언이 있었다면 어떤 형태였습니까?

- () ① 구두에 의하였다.
 () ② 문서(유언장)로 남겼다.
 () ③ 기타()

11. 선친의 농지는 누구에게 상속되었습니까?

- () ① 본인에게 일괄상속되었다.
 () ② 자식들에게 골고루 나눠어졌다.
 () ③ 기타()

12. 선생님께서 농지를 상속받은 해는 몇 년도였습니까? (19)년

13. 선생님은 언제부터 경영주가 되어 자립하게 되었습니까?

- () ① 부친이 사망한 후에 자립하였다.
 () ② 부친이 농사에서 은퇴하면서 자립하였다.
 () ③ 본인이 이미 자립한 후에 부친이 은퇴하였다.

14. 선생님이 경영주가 된 것은 다음 어느 경우에 해당합니까?

- () ① 선친 생존시에 조금씩 경영권을 물려받고 사망 후에 혼자 재산을 상속받았다.
 () ② 선친 생존시에 조금씩 경영권을 물려받았으나 재산은 형제들과 분할상속하였다.
 () ③ 선친으로부터 일시에 경영권을 이양 받고 사망 후에 혼자 재산을 상속받았다.

- () ④ 선친으로부터 일시에 경영권을 이양 받았으나 재산은 형제들과 분할상속하였다.
- () ⑤ 선친의 사망과 함께 혼자 경영권과 재산을 모두 상속받았다.
- () ⑥ 선친의 사망으로 경영권은 물려받았으나 재산은 형제들과 분할 상속하였다.
15. 선친이 생전에 경영권을 물려 주셨다면 그 사유는 무엇이었습니까?
- () ① 노령으로 경영이 곤란하였기 때문에
- () ② 갑작스런 병환으로 인하여
- () ③ 상속을 전제로 하여 미리 물려 주셨다.
- () ④ 본인이 분가를 원했기 때문에
- () ⑤ 본인을 농업에 전념시키기 위하여
- () ⑥ 선친께서 다른 사업을 하고자 했기 때문에
- () ⑦ 기타()
16. 선생님은 앞으로 얼마나 더 농사일을 계속하실 수 있다고 보십니까?
- () ① 5년 정도 () ② 10년 정도
- () ③ 15년 정도 () ④ 20년 정도
- () ⑤ 20년 이상
17. 선생님의 자녀 중에서 농사를 이어받을 후계자는 있습니까?
- () ① 현재 함께 사는 자식이 물려받을 것이다.
- () ② 지금은 나가 살지만 나중에 돌아와서 물려받을 것이다.
- () ③ 자식은 있지만 농사를 이어받을지 모르겠다.
- () ④ 농사를 물려줄 후계자가 없다.
18. 후계자에게 농사를 물려 주기 위해 어떤 방법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 () ① 생전에 후계자에게 명의를 이전하겠다.
- () ② 유언을 통하여 후계자가 상속받도록 하겠다.
- () ③ 특별히 생각하는 것이 없다.

() ④ 기타()

19. 후계자 이외의 자녀에게는 주로 어떤 원조를 생각하고 계십니까?

- () ① 학자금 지원 () ② 결혼자금 지원
 () ③ 사업자금 지원 () ④ 농지의 분할
 () ⑤ 택지나 가옥 증여 () ⑤ 별다른 생각이 없다.

20. 선생님께서 농사를 그만두게 되면 농지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 ① 농사지를 후계자에게 승계할 것이다.
 () ② 농사짓지 않는 자녀들에게 나누어 주겠다.
 () ③ 농사지를 다른 사람에게 팔겠다.
 () ④ 팔지 않고 임대하겠다.
 () ⑤ 기타()

21. 선생님께서는 농지에 대한 상속도 일반적인 재산상속과 같이 자녀들이 모두 동등한 권리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 ① 일반 재산상속과 같이 동등한 권리를 가져야 한다.
 () ② 농지는 농사짓는 자식에게 권리가 더 주어져야 한다.
 () ③ 기타()

22. 선생님께서는 현재의 농지상속 제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 ① 장자(큰아들)에게 많이 상속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 ② 농사지를 후계자만이 상속받는 일자상속이 바람직하다.
 () ③ 자식들에게 골고루 나누어 주는 분할상속이 바람직하다.
 () ④ 기타()

23. 선생님의 마을(자연부락)은 어떠한 농업지대에 속합니까?

- () ① 시급 도시에 인접하여 겸업농가가 많은 근교지역
 () ② 농업이 중심이고 주로 논이 많은 평야지역
 () ③ 논에 비하여 밭이 많은 중산간 지역

() ④ 경지보다는 산이 많은 산간지역

24. 선생님의 마을은 같은 성씨의 가구가 얼마나 됩니까?

- () ① 같은 성씨가 절반을 넘는다.
- () ② 같은 성씨가 절반 정도는 된다.
- () ③ 같은 성씨가 절반이 안된다.

25. 올해 마을에서 거래되는 농지가격은 얼마나 됩니까?

[논 값은 평당 ()원
 [밭 값은 평당 ()원

26. 마을에서 농사짓는 30~40대의 청장년은 몇명이나 되고,
 이들은 몇째 아들들입니까?

총 ()명 [장남 ()명
 [차남 ()명
 [삼남 ()명
 [사남 이하 ()명

27. 마을에는 큰아들이 농사를 물려받아야 한다는 인식이 남아 있습니까?

- () ① 장자가 의무감을 가질 정도로 강하게 남아 있다.
- () ② 대체로 장자가 상속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편이다.
- () ③ 거의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다.

28. 마을의 농지는 대체로 누구에게 상속되고 있습니까?

- () ① 대체로 장자(큰아들)에게 상속하는 편이다.
- () ② 자식들에게 고르게 나누어서 상속하는 편이다.
- () ③ 나누어서 상속하되 장자에게 많이 주는 편이다.
- () ④ 사람마다 각양각색이다.

29. 상속자가 비농민인 경우에 그 농지는 어떻게 하는 편입니까?

- () ① 농사짓는 형제나 친척이 사용대차하여 관리한다.

- () ② 농사짓는 형제나 친척에게 매각 또는 임대한다.
 () ③ 남에게 매각하거나 임대한다.
 () ④ 기타()
30. 최근에 들어서는 농지가 어떠한 과정으로 상속되고 있습니까?
 () ① 생전에 자식에게 증여하는 경우가 많다.
 () ② 사망후에 유산으로 상속되는 경우가 많다.
 () ③ 생전 증여와 유산 상속이 거의 반반씩이다.
 () ④ 증여나 상속보다는 매각하는 경우가 많다.
31. 주택은 어떻게 상속되고 있습니까?
 () ① 농사짓는 후계자가 상속받는 편이다.
 () ② 매각을 하거나 지분 등으로 분할상속된다.
 () ③ 기타()
32. 농기계나 가축 등은 어떻게 상속되고 있습니까?
 () ① 농사짓는 후계자가 상속받는 편이다.
 () ② 매각을 하거나 지분 등으로 분할상속된다.
 () ③ 기타()
33. 마을에는 재산상속을 둘러싸고 법정에 가는 일이 종종 있습니까?
 () ① 법정에 가는 일이 종종 있다.
 () ② 대개 합의하여 해결하는 편이다.
 () ③ 기타()
34. 마을에서는 후계자에게 농사를 물려 주기 위해 주로 어떤 방법이 이용되고 있습니까?
 () ① 생전에 후계자에게 경영을 이양하는 경우가 많다.
 () ② 후계자가 경영에 참여하다가 상속을 받는다.
 () ③ 기타()

35. 평소에 농가상속과 관련하여 느끼신 점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적어 주십시오.

인용 및 참고문헌

- 권오승. 1978. “농지의 상속과 농지 세분화의 방지,” 『Fides』 22(1).
- 김용한. 1964. 『친족상속법』. 박영사.
- _____. 1974. “농지입법을 위한 실태조사,” 『진대학술지』 17.
- 김운근, 김태곤, 허영구. 1985. 「고령화 추세에 따른 농업구조조정 및 제도개선 방안」, 연구보고 103.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김정호. 1993. 「농가의 정의에 관한 연구」, 연구보고 278.
- 김주수. 1961. “농촌의 가족과 상속,” 『경희법학』 3(1).
- 신영호. 1980. “농지상속입법론,” 『고려대학교 대학원 논문집』.
- 이광규. 1974. 『한국가족의 구조 분석』. 일지사.
- _____. 1990. 『한국의 가족과 종족』. 민음사.
- 이 봉. 1972. “재산상속의 이론과 실제,” 『증대논문집』 17.
- 정기환. 1993. 「농가의 성격변천에 관한 연구」, 연구보고 296.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최달근. 1975. 『한국의 재산상속과 농지』.
- 최양부, 오내원. 1983. “농가경제의 농지상속과 소농의 창출,” 『농촌경제』 11 (1).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_____. 1987. 「농가경제의 동태적 변화분석」, M15-5.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최재석. 1966. 『한국가족연구』. 민중서관.
- _____. 1983. 『한국가족제도사연구』. 일지사.
- 한국가족학연구회. 1993. 『가족학』. 하우.
- 한국법제연구원. 1992. 12. 「국역 관습조사보고서」.
- 稻本洋之助. 1984. “農家相續調査の前提狀況,” 『社會科學研究』 36(3). 東京大學社會科學研究所紀要.
- _____. 1984. “農家相續の概念と類型,” 『社會科學研究』 36(4). 東京大學社會科學研究所紀要.

- 稲本洋之助 外. 1981. “フランスにおける家族農業経営資産の相續,” 「社會科學研究」 33: 5. 東京大學社會科學研究所紀要.
- 小林茂. 1993. 「農家相續の經濟學的研究」. 成文堂.
- 玉眞之介. 1993. 「農家と農地の經濟學」. 農文協.
- 用島武宣. 1965. 「農家相續と農地」. 東京大學出版會.
- 原田純孝. 1986a. “農家相續における所有と經營(一),” 「社會科學研究」 37(6). 東京大學社會科學研究所紀要.
- _____. 1986b. “農家相續における所有と經營(二),” 「社會科學研究」 38(3). 東京大學社會科學研究所紀要.
- _____. 1987. “農家相續における所有と經營(三),” 「社會科學研究」 38(5). 東京大學社會科學研究所紀要.
- _____. 1988. “農家相續における所有と經營(四),” 「社會科學研究」 39(5). 東京大學社會科學研究所紀要.
- 中尾英俊. 1977. “戰後農家相續の動向と課題,” 「家族, 政策と法」, 福島正夫(編). 東京大學出版會.
- Barnum, Howard N. and Lyn Squire. 1979. *A Model of an Agricultural Household*. The World Bank.
- Scott, James C. 1976. *The Moral Economy of the Peasant*. Yail Univ. Press.

연구보고 R328

농가의 상속과 경영승계에 관한 연구

찍은 날 1995. 12 펴낸날 1995. 12

발행인 정 영 일

펴낸곳 한국농촌경제연구원(962-7311~5)

130-05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동 4-102

등 록 제5-10호(1979. 5. 25)

찍은곳 동양문화인쇄주식회사 737-2101~5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시하면 자유로이 인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 전재하거나 복사하면 법에 저촉됩니다.
- 이 연구는 본 연구의 공식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